

경상북도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

경상북도 산불 피해 지 / 원 / 안 / 내 / 서

2025. 4. 21.



◆ 본 자료는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항목에 관한 종합안내서임

※ 지원 세부항목은 지자체 조례 및 지침 에 따라 항목 추가 수정 가능

목 차

I. 센터 운영, 피해사실확인서, 직·간접 지원내용

1. 산불피해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7
2. 피해사실확인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등 발급방법	8
3. 분야별 지원(직접지원)	10
4. 분야별 지원(간접지원)	11
5.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분야별 추가 지원(간접지원)	17

II. 분야별 지원(간접지원) 항목별 세부내용

1. 국세 납세 유예	20
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21
3. 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 유예	22
4.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자금 융자	23
5.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	24
6.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출 안내	25
7.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	26
8.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27
9. 상·하수도 요금 감면	28
10. 무료 법률지원	29
11. 국·공유재산,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30
12. 농기계 수리지원	31
13.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32
14.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33
15. 위기가족 긴급지원	34
1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35

목 차

17. 과태료 징수유예	36
18.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37
1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38
20.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39
21. 민방위대 동원 유예	40
22.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및 연기	41
23. 우체국 금융(예금·보험) 특별지원 등	42
24.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43
25.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44
26. 재해중소기업 특례 보증	45
27. 농·어·임업 재해복구 자금 융자	46
28. 농기계 무상 임대	47
29. 설계·감리비 지원	48
30.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 감면	49
31. 농지은행 지원농가 원리금 상환연기 및 임차료 감면	50
32. 임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 및 임업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 감면	51
33. 시민안전보험 안내	52
34.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요건 완화	54
35.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지원 확대	55
36. 국민취업지원제도 계획수립 조건 완화	56
37. 실업급여 수급기준 완화	57
38. 고용유지지원	58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및 중소기업 공제기금 지원	59
40.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60
41. 어선재해보상보험 보상지원	61
42. 동물구조·치료·보호 지원	62
4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	63
44. 대출, 보험 등 금융지원 내역	64
45. 보험가입내역 조회 지원	73

목 차

Ⅲ.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분야별 추가 지원(간접지원) 항목별 세부내용

46.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76
47.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77
48. 도시가스 요금 감면	78
49. 지역난방 요금 감면	79
50. 전기요금 감면	80
51. 통신요금 감면	81
52.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82
53. 특허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감면	83
54. TV 수수료 면제	84
55. 전파사용료 감면	85
56.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86
5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87
58.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88
59. 산재보상 신속지원	89
60. 특별재난지역 장애인 보조기기 재지급 절차 간소화	90
61.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급여 지원	91
62.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92
6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93
6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94

**| .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직 · 간접지원**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5. 3. 27. ~ 피해수습 종료시 까지
- 장 소 : 안동체육관 연회장(지하1층)
- 지원기관 : 중앙부처(15개), 지자체(4개), 유관기관(12개) 등
- 주요내용
 - ① 피해 민원접수 및 복구 상담
 - ② 세금·국민연금 유예 상담
 - ③ 복구자금 융자·피해 보험 상담
 - ④ 기타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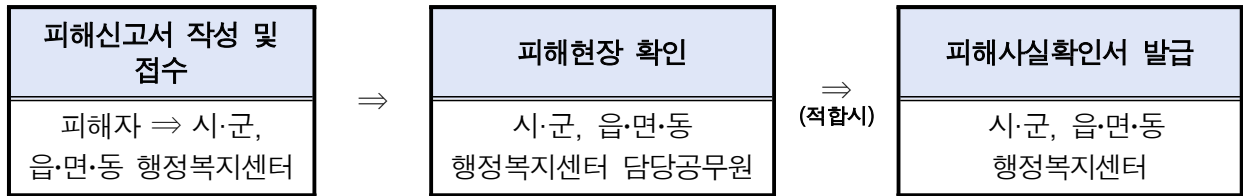
□ 통합지원센터 배치도 ☎ 054-840-0000

총괄지원반 (3950)	경상북도(3962)	중기부(3974)	문체부(3986)	농식품부(6736)
민원접수(3951)	영양군(3963)	고용부(3975)	경북북부보훈지청 (054-650-1441)	국민권익 위원회 (044-200-7414)
의료지원반 (3952)	농협손해보험 (054-851-5715)	여가부(3976)	한국국토 정보공사(3989)	한국토지 주택공사(6741)
농작물, 농기계 (3953)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경북신용 보증재단(3977)	교육부 (044-203-6660)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 (054-850-9093)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포항지사 (054-280-0851~8)
영덕군(3954)	한국농어촌공사 (3966)	경찰서 (안동 054-850-9337) (의성 054-830-8252) (청송 054-870-2252) (영양 054-680-0324) (영덕 054-730-5352)	과기부 (본부:044-202-6778) (지역:053-749-2886)	경북원스톱 지원팀 (054-880-3318)
청송군(3955)	근로복지공단 (3967)	병무청(3980)	농식품부 동물복지 (044-201-2623)	제3260부대 (053-320-6990)
의성군(3956)	국민건강 보험공단 (본부:033-736-2555) (지역:053-650-8551)	해양수산부(6716)	환경부 (044-230-6413)	
소상공인(3957)	한국전력공사 (054-850-2162)	수협 (02-2240-8521) (053-740-7540)	국세청 (054-851-0211)	
공공임대주택 (3958)	지역난방공사 (3970)	NH농협 (054-851-5543)	한국지방 재정공제회(3997)	
주거지원(3959)	한국가스공사 (053-670-6723)	금융위원회 (02-2100-286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3997)	
복지상담(3960)	우정사업본부 (044-200-8832)	법무부, 대한법률 구조공단(3984)		
자원봉사(3961)	보건복지부 (3973)	산림청(3985)		
	한국전기 안전공사 (054-840-6717)			

구분	발급처	구비서류	비고
피해사실 확인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안동시,의성군, 청송군,영덕군, 영양군 시설소관부서	· 피해자 본인 방문: 본인 신분증 · 피해자 가족 방문 : 방문자 신분증, 피해자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재해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재해확인증”	시·군 기업지원 관련 부서 방문 신청	① 본인 신분증(영업주) ②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발급) ③ 최근3년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④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 온라인 이용 불가 시, 중소벤처기업청 경북 북부사무소 방문 신청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최근3년치('22~'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③ 20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인원 있을 경우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본인 신분증 지참 가까운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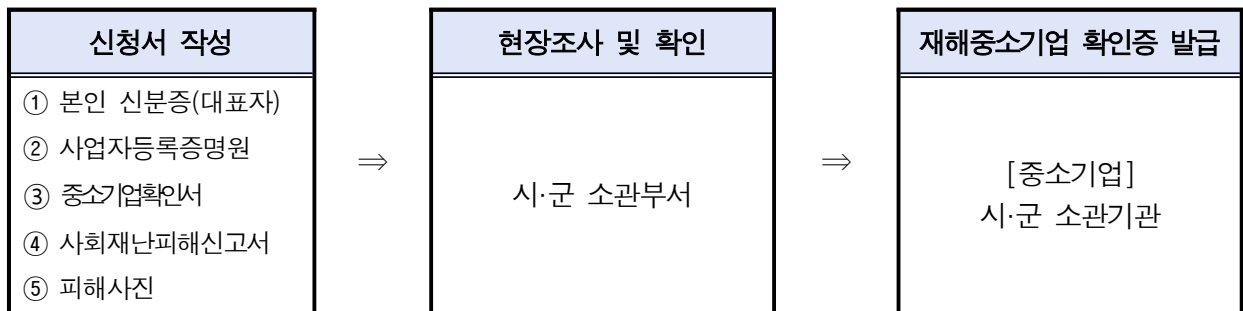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재해확인증

□ 피해신고 및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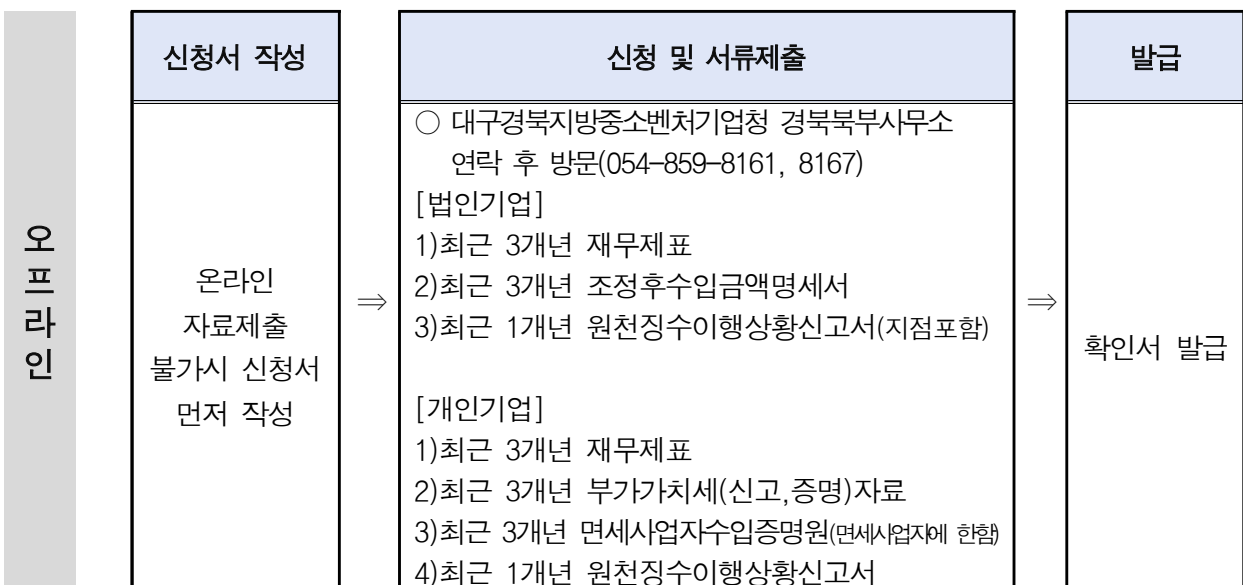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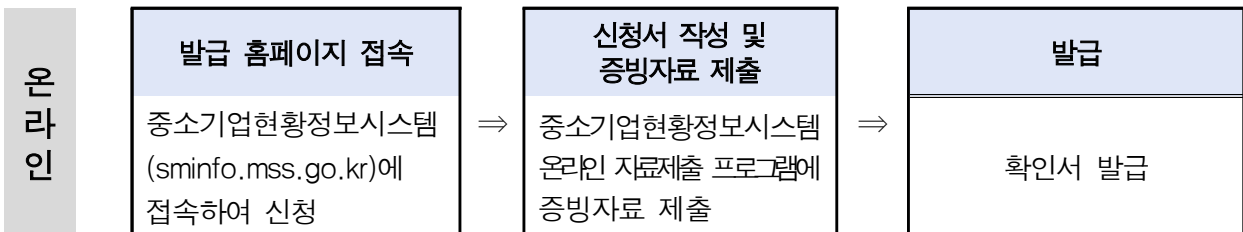
※ 피해접수 완료일 이후 피해사실이 확정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온라인 발급이 원칙이나, 발급 불가 시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발급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1	생활안정 지원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table><tr><th>항목</th><th>지원대상</th><th>지원금액</th></tr><tr><td rowspan="3">구호금</td><td>사망·실종</td><td>2,000만원</td></tr><tr><td rowspan="2">부상</td><td>장해 1~7</td><td>1,000만원</td></tr><tr><td>장해 8~14</td><td>500만원</td></tr><tr><td>생계비</td><td>▶ 주소득자 사망·실종·부상 또는 휴 폐업·실직 ▶ 주생계수단 농·어·임·소금생산업시설 50%이상 피해</td><td>① 1인 가구 730,500원 ② 2인 가구 1,205,000원 ③ 3인 가구 1,541,700원 ④ 4인 가구 1,872,700원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td></tr><tr><td rowspan="2">주거비</td><td>▶ 주택 전파로 거주불가능 ▶ 주택 반파로 거주불가능 ▶ 세입자 보조</td><td>2,000 ~3,600만원 1,000 ~1,800만원 600만원</td></tr><tr><td>▶ 피해예상으로 주거불가능 재난 수습에 따라 이주</td><td>210만원 이내/세대 ※1일 7만원 최대 30일</td></tr><tr><td rowspan="2">구호비</td><td>▶ 주택 피해(전파,반파)로 거주 불가능</td><td>10,000원/1일/1인 (전파 60일, 반파 30일)</td></tr><tr><td>▶ 재난영향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td><td>10,000원(일/인), 최대 30일</td></tr><tr><td>교육비</td><td>▶ 생활안정지원 대상 고등학생</td><td>지방교육감 고시 금액 최대 100만원 범위내 6개월 수업료</td></tr><tr><td>소상공인</td><td>▶ 영업장 피해로 영업 불가시</td><td>업체당 300만원</td></tr><tr><td>복구비</td><td>▶ 농·어·임·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인 사람 중 해당시설 피해 발생 시</td><td>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복구 비용 산정기준 준용</td></tr></table>	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호금	사망·실종	2,000만원	부상	장해 1~7	1,000만원	장해 8~14	500만원	생계비	▶ 주소득자 사망·실종·부상 또는 휴 폐업·실직 ▶ 주생계수단 농·어·임·소금생산업시설 50%이상 피해	① 1인 가구 730,500원 ② 2인 가구 1,205,000원 ③ 3인 가구 1,541,700원 ④ 4인 가구 1,872,700원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주거비	▶ 주택 전파로 거주불가능 ▶ 주택 반파로 거주불가능 ▶ 세입자 보조	2,000 ~3,600만원 1,000 ~1,800만원 600만원	▶ 피해예상으로 주거불가능 재난 수습에 따라 이주	210만원 이내/세대 ※1일 7만원 최대 30일	구호비	▶ 주택 피해(전파,반파)로 거주 불가능	10,000원/1일/1인 (전파 60일, 반파 30일)	▶ 재난영향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10,000원(일/인), 최대 30일	교육비	▶ 생활안정지원 대상 고등학생	지방교육감 고시 금액 최대 100만원 범위내 6개월 수업료	소상공인	▶ 영업장 피해로 영업 불가시	업체당 300만원	복구비	▶ 농·어·임·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인 사람 중 해당시설 피해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복구 비용 산정기준 준용	「재난안전법」 제66조
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호금	사망·실종	2,000만원																																		
	부상	장해 1~7	1,000만원																																	
		장해 8~14	500만원																																	
생계비	▶ 주소득자 사망·실종·부상 또는 휴 폐업·실직 ▶ 주생계수단 농·어·임·소금생산업시설 50%이상 피해	① 1인 가구 730,500원 ② 2인 가구 1,205,000원 ③ 3인 가구 1,541,700원 ④ 4인 가구 1,872,700원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주거비	▶ 주택 전파로 거주불가능 ▶ 주택 반파로 거주불가능 ▶ 세입자 보조	2,000 ~3,600만원 1,000 ~1,800만원 600만원																																		
	▶ 피해예상으로 주거불가능 재난 수습에 따라 이주	210만원 이내/세대 ※1일 7만원 최대 30일																																		
구호비	▶ 주택 피해(전파,반파)로 거주 불가능	10,000원/1일/1인 (전파 60일, 반파 30일)																																		
	▶ 재난영향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10,000원(일/인), 최대 30일																																		
교육비	▶ 생활안정지원 대상 고등학생	지방교육감 고시 금액 최대 100만원 범위내 6개월 수업료																																		
소상공인	▶ 영업장 피해로 영업 불가시	업체당 300만원																																		
복구비	▶ 농·어·임·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인 사람 중 해당시설 피해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복구 비용 산정기준 준용																																		
2	구호지원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및 구호물자 등 지원	「재해구호법」 제3조~제5조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3	의료비 지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긴급한 치료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先 보증 後 지원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사회재난 복구지원 관련 자치단체 조례																																	
4	장례 지원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도의적 차원의 통상적 수준 장례비 지원, 자치단체에서 장례기관에 장례비용 보증 후 지급																																		

4

분야별 지원 (간접지원)

연번	지원 항목	지원기준 및 내용	연락처	신청방법	쪽수
1	국세 납세유예	• 납부연장, 체납처분 유예 - 최장 2년 연장(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1년~9개월	국세청 센터 (054-851-0211)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p20
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자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 가액 공제	국세청 센터 (054-840-3961)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p21
3	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	•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2년) •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유예 - 최장 2년 연장(특별재난지역)	안동시 센터 (054-840-3950~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감면·체납 처분 유예 (별도신청 없음) 납기유예·면제 (세정과 신청)	p22
4	재해주택복 구 및 구입 자금융자	• 재난으로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지자체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지원 내용 확인 필요) - (대출금리) 연 1.5% - (대출기간) 20년(3년거치 17년 상환) - (대출한도) 전파 13,600만원 반파 6,800만원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1599-0800→3)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전화 상담	p23
5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지자체에 따라 상이) -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054-840-3974) 안동시 센터 (054-840-3950~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시·군 재해확인증 발급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융자신청	p24
6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출 안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 신청일 현재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 (보증한도) 5억원 이내 ※ 세부 보증한도·기준 등은 시군 소관과에 문의 - (이자지원) 3% - (대출기간)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한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5억원	안동시 센터 (054-840-3950~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시·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 추천서 발급 (경제진흥원) →시중은행 융자신청	p25

연번	지원항목	지원기준 및 내용	연락처	신청방법	쪽수
7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안 정자금 융자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시군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지자체에 따라 상이)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054-840-3974) 안동시 (054-840-3950~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시·군 재해확인증 발급 → 경북신용 보증재단 보증서신청 → 시중은행 융자신청	p26
8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안동지사 (054-850-9093)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p27
9	상하수도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의 상하수도사용요금 전액 감면 <의성군>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 - (하수도) 하수도 사용요금 1/2 감면 <영양군> - 피해지역/가구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안동시 센터 (054-840-3950~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별도 신청 없음	p28
10	무료 법률상담 등 지원	재난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재난사고 관련 법률상담 지원	법무부 센터 (054-840-3983)	방문신청 유선상담	p29
11	국·공 유재산,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재난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산림청 센터 (054-840-3985)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p30
12	농기계 수리지원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부품 금액 15천원 이하 무상지원,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징수 ※ 농기계회사 등에게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리할 경우 무상지원	안동시 센터 (054-840-5674)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 신청	p31
13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산불에 한하여 지원)	-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된 경우: 100% - 그 외 토지 등: 50%	국토부 센터 (054-840-3989)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p32
14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이재민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LH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 지원(입주일로 부터 최대 2년)	LH 대구경북본부 (054-840-6741)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지자체에 신청	p33

연번	지원항목	지원기준 및 내용	연락처	신청방법	쪽수
15	위기가족 긴급지원	• 재난 등으로 가족 부양 곤란 시 가족 돌봄, 상담 등 지원	여가부 센터 (054-840-3976)	직접방문 유선상담	p34
1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재난 피해 신고 등을 위하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안동시 센터 (054-840-3950~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신분증지참 직접방문	p35
17	과태료 징수 유예	• 재난 피해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 기일 등 연기 지원(1년) (※ 개별법령에 징수유예 규정 있는 과태료)	경찰서 (안동 054-850-9337) (의성 054-830-8252) (청송 054-870-2252) (영양 054-680-0324) (영덕 054-730-5352)	해당기관 신청	p36
18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센터 (054-840-3989)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방문	p37
1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가족이 재난을 당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병무청 센터 (054-840-3980)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방문	p38
20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 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민방위 교 육을 받을 수 없는 자 ※ 단,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당해 연도의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심의·의결)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 및 의결 불필요	안동시 센터 (054-840-3950~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안전재난과 피해신고	p39
21	민방위대 동원유예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원 명령자가 명하는 민방위대 동원에 대한 유예 - 동원유예 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거주지 통장 · 이장의 확인서	안동시 센터 (054-840-3950~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방문	p40
22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및 연기	• 당해 연도의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연기 (병무청) • 당해 연도의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 면제(국방부)	병무청 센터 (054-840-3980) 제3260부대 (053-320-6990)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방문	p41
23	우체국금융 (예금·보험) 특별지원 등	• 구호우편물 무료 취급 •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 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는 방문 신청	우정사업본부 (044-200-8832)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p42

연번	지원항목	지원기준 및 내용	연락처	신청방법	쪽수
24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전소) : 500만원 - 기타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경북북부보훈지청 (054-650-1441) 경북남부보훈지청 (054-778-2615)	지자체 피해사실 신고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p43
25	재난피해자 대상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 재난피해자 중복처방 한시적으로 인정, 급여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5718~5720)	요양기관에 의약품 재처방·조제 신청	p44
26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한도) 3억원 ※ 세부 보증한도·기준 등은 사업장 소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 • (보증비율) 전액보증 100% • (보증료율) 0.5%고정(특별재난지역 0.1%) • (지원가능 자금) 운전자금 ※ 다만,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가능	안동시 센터 (054-840-3950~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p45
27	농·어·임업 재해복구자 금 융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5년(거치기간 5년 포함) • (대출한도) 농·어·임업 재해복구비(보조, 융자, 자부담) 중 융자금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농·어·임업별 융자금 확인	안동시 센터 (054-840-3950~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농협(054-851-5543) 수협(053-740-7540)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p46
28	농기계 무상임대	• 농업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 전액감면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4	안동시 센터 (054-840-5674)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신청	p47
29	설계· 감리비 지원	• 산불재해 단독주택 - 건축신고대상건축물(설계비 할인) - 건축허가대상건축물(설계,감리 할인) ※ 추가비용관련 각 사무소별 상이, 인허가 처리비용 및 전기설비 등의 외주용역비 별도	안동시 센터 (054-840-5984)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방문 또는 유선신청	p48
30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 대상: 산불 피해 농업인 •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 가능 금액결정 • 기존 농협대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안동시 센터 (054-840-395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p49

연번	지원항목	지원기준 및 내용	연락처	신청방법	쪽수
		및 이자감면 지원 ※ 수요조사 이후 농식품부 자금배정 ※ 농림부 농업금융정책과 협의 확인 필요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문의	
31	농지은행 지원농가 원리금 상환연기및 임대료 감면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연기 및 임대료 감면 ※ (지원내용) 자연재난 피해 농가 대상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지원, 임차료 감면 추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센터 (054-840-3966)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첨부하여 공사에 신청	p50
32	임업인 재해대책경 영자금 대출 및 임업경영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 대상: 산불 피해 임업인 • 임가별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 가능 금액 결정 • 기존 산림조합대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 ※ 수요조사 이후 산림청 자금배정	산림청 센터 (054-840-3985)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p51
33	시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항목) 지자체가 별도 가입한 기본보장 항목 37종 및 기타 보장항목 18종 운영 • (보장한도) 가입 항목별, 지역별 10~50 백만원, 화상 수술비 최대 1백만원 지원	시보험지원반 센터 (054-840-3997)	전화상담	p52
34	직업능력개발 훈련 출석요건 완화	• 실업자, 재직자의 훈련참여 출석요건 완화 • 중도 탈락 시 불이익 배제(지원금 차감 미적용)	고용부 센터 (054-840-3975)	훈련기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및 신청	p54
35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 (현 6회 한도 → 심리 안전 시까지)	고용부 센터 (054-840-3975)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및 신청	p55
36	국민취업 지원제도 계획수립 조건 완화	• 급자격심사·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연장 (7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요건 완화 (대면 3회 → 유선 2회)	고용부 센터 (054-840-3975)	고용센터 문의 및 신청	p56
37	실업급여 수급기준 완화	•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 인정 기준 요건 완화	고용부 센터 (054-840-3975)	고용센터 문의 및 신청	p57
38	고용유지지원	•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를	고용부 센터	고용센터	p58

연번	지원항목	지원기준 및 내용	연락처	신청방법	쪽수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	(054-840-3975)	방문 또는 우편접수	
39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및 중소기업 공제기금 지원	산불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 대상 금리 인하 및 부금 납부 6개월 유예 혜택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054-655-8314)	중소기업 중앙회 연락 후 방문	p59
40	어업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 긴급경영자금대출 (대출금리) 연 1.8% 고정 또는 변동금리 (융자기간) 1년 (융자한도) 피해복구 자부담 범위내내최대액원	수협 수산금융부 (02-2240-8521)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p60
41	어선재해보 상보험 보상지원	-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신속지급 (화재로 인한 어선 선체,기관 및 의장품 가입한도 내 손해보상)	수협중앙회 경북본부 (054-256-7552)	해당기관 사고신고 및 보험금 청구	p61
42	동물구조· 치료·보호 지원	- 사료, 소독약, 의약품 등 지원 - 수의사회 지원을 통한 치료·검사 지원 - 야생동물, 유기·유실 동물 등에 대한 구조 및 보호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 (044-201-2623)	동물 구조 및 보호 요청	p62
4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 기금 특별지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및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 상환기간 1년 연장 - 기존 상환이자 1% 일괄 감면 - 농가당 10백만원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경상북도 (054-880-3318)	상환기간 연장 (농수협 방문) 긴급 경영자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p63
44	대출,보험 등 금융지원	(개인)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최대 1년),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기업)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감독원 (1332)	피해사실확인서 지참 후 금융기관 방문 신청	p64
45	보험가입내역 조회지원	- 생존자 보험가입조회 - 조회 신청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내역 조회결과 제공 - 상속인 보험가입조회 - 사망자(피상속인)이 사망기준일자 현재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 계약의 내역 조회결과 제공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상담] 중앙합동지원 센터 [신청] 손·생보험회 방문 등	p73

연번	지원항목	지원기준 및 내용	연락처	신청방법	쪽수												
46	국민건강 보험료 경감	•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분의 건강보험료 30~50% 경감 - 해당 시·군에 피해신고 시, 피해신고서에 건강보험료 경감신청 함께 작성	안동지사 센터 (054-840-3968)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별도 신청 없음	p76												
47	국민건강 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 건강보험료 체납 시 6개월분('25.3.~'25.8.)의 연체금 징수 예외 - 해당 시·군에 피해신고 시, 피해신고서에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내 함께 작성	안동지사 센터 (054-840-3968)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별도 신청 없음	p77												
48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 주택 피해자(전파,반파) - 주택피해 유형별 1개월분 도시가스요금 정액 차등 지원 <table><tr><th>구 분</th><th>전 파</th><th>반 파</th><th>침 수</th></tr><tr><td>취사용 사용가구</td><td colspan="3">1,680원</td></tr><tr><td>취사난방용 사용가구</td><td>12,400원</td><td colspan="2">6,200원</td></tr></table>	구 분	전 파	반 파	침 수	취사용 사용가구	1,680원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12,400원	6,200원		한국가스공사 (053-670-672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기관 문의	p78
구 분	전 파	반 파	침 수														
취사용 사용가구	1,680원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12,400원	6,200원															
49	지역난방요금 감면	•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재개전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센터 (054-840-3970)	별도 신청 없음	p79												
50	전기요금감면	• 멸실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054-850-2162)	별도 신청 없음	p80												
51	통신요금 감면	• 가구당 1회선 지원, 최대 12,500원 • 시내 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유선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과기부 센터 (본부:044-202-6778) (지역:053-749-2886)	별도 신청 없음	p81												
52	유료방송 서비스요금 감면	•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해지 위약금 면제	과기부 센터 (본부:044-202-6778) (지역:053-749-2886)	별도 신청 없음	p82												
53	특허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감면	• 개인, 소상공인 특허료 등록 수수료 감면 ※ 100의70 ~ 100분의90 * 경제기업과 확인 필요	안동시 센터 (054-840-3950~3) 의성군(054-840-3956) 청송군(054-840-3955) 영덕군(054-840-3954) 영양군(054-840-396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기관 문의	p83												
54	TV 수신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의 피해 거주민의 소지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방통위 심의·의결로 설정) 면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09) KBS 콜센터 (1588-1801)	별도 신청 없음	p84												
55	전파사용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과기부 센터	피해지역 관할	p85												

연번	지원항목	지원기준 및 내용	연락처	신청방법	쪽수
	감면	• 2분기 기간의 전파사용료 감면	(본부:044-202-6778) (지역:053-749-2886)	전파관리소에서 일괄 감면 처리.안내	
56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해 신축·증축·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 면적 660㎡ 이하인 경우로 한정	한국농어촌공사 센터 (054-840-3966)	종합허가과 신청	p86
57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해 신축·증축·이축할 경우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산림청 센터 (054-840-3985)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종합 허가과 방문	p87
58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 입은 경우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지침 적용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병무청 센터 (054-840-3980) 제3260부대 (053-320-6990)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기관 방문	p88
59	산재보상 신속지원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산불로 인하여 업무상재해가(사망 포함) 발생한 근로자의 산재보상 신속 지원	근로복지공단 센터 (054-840-3967)	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p89
60	특별재난지역 장애인 보조기기 재지급 절차 간소화	• 피해지역 장애인 보조기기 추가 급여 - 장애인 보조기 분실·훼손·멸실된 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지자체 발급 피해 사실 확인서 마감일까지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033-736-4661) (지역:053-650-8901)	재지급 신청서 및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 공단 제출	p90
61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급여 지원	• 피해지역 거주 어르신의 노인틀니(재제작) 추가 지원 - 교체주기 전 해당틀니 파손 또는 분실된 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지자체 발급 피해 사실 확인서 마감일까지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033-736-4661) (지역:053-650-8901)	등록신청서 및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 공단 제출	p91
62	고용·산재보 험료 지원	• 특별재난지역 내 산불피해 사업장의 고용· 산재 보험료('25.3~5월 납부기한 도래분) 납부기한 연장, 연체금 및 가산금 면제 및 체납 처분 유예	근로복지공단 센터 (054-840-3967)	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p92
6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 완화 등	•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중인 실업자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소득요건 폐지 및 한도 확대	근로복지공단 센터 (054-840-3967)	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p93
64	생활안정 자금 융자 요건 완화 등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상환 기간 연장	근로복지공단 센터 (054-840-3967)	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p94

II. 분야별 지원(간접지원) 지원항목별 세부내용

□ 지원근거

- 「국세기본법」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제2조의 2
- 「국세징수법」제13조 및 제14조, 제105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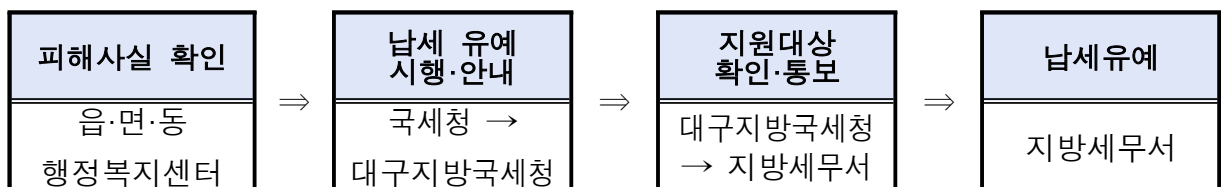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피해자 중 국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 및 이미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 지원내용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또는 고지로 인해 납부해야 할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압류·매각의 유예)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
- (환급금 조기지급)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4월 10일까지 신속 지급, '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시 5월 2일 지급
- (신고내용확인 제외) '25년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
-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연기 또는 중지 적극 검토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서를 홈택스* 인터넷사이트(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제출
-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 위 지원대상 외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최대 9개월 압류·매각의 유예 최대 1년 연장 가능

□ 지원근거

- 「법인세법」제58조
- 「소득세법」제58조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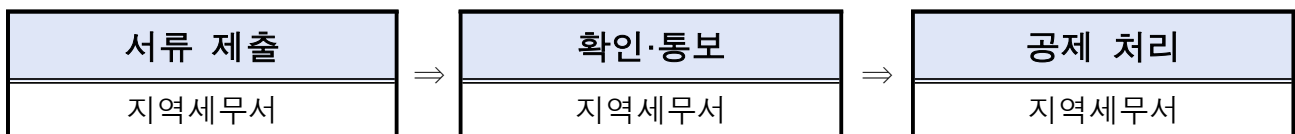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고,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세액을 공제

□ 지원내용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소득)세와 부과된 법인(소득)세로서 미납된 법인(소득)세액 및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액에 재해(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실된 자산가액 한도로 그 세액에서 공제

* 재해(자산)상실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가액(토지제외)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홈택스 인터넷사이트((hometax.go.rk)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 신청·결과 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로 검색

□ 지원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2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25조, 105조
-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의3(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지원대상

- 재난피해로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방세 감면

- (대체취득 자산 취득세 등 면제) 재난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자산*의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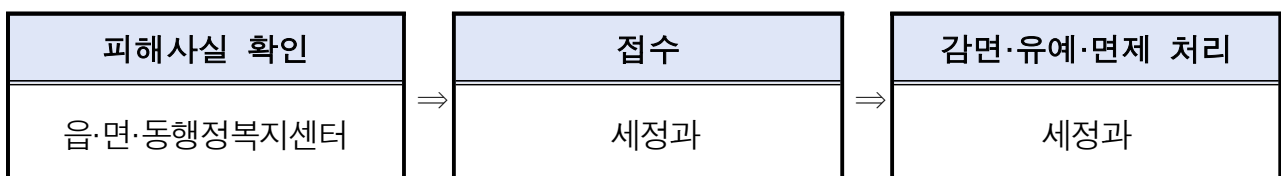
*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산세, 자동차세 면제

○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세정과 신청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 ※ 시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용자대상임이 통보된 자만 가능
- ※ 호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읍·면 지역은 100㎡이하)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5%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20년 (3년 거치, 17년 상환)
- (대출한도) 특별재난지역 – 전파 13,600만원, 반파 6,800만원
일반재난지역 – 전파 8,400만원, 반파 4,200만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시중은행 지점 피해 신고 등(별도 용자신청)

□ 지원근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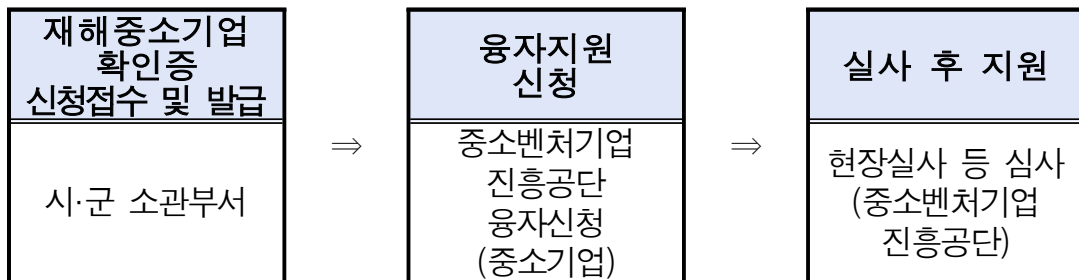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연 1.9% (고정금리) [1.5%로 변경 예상(시기 미확정)]
-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부(☎054-440-5920~3, www.kosmes.or.kr)에 문의 및 융자신청

□ 신청방법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후, 해당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 ①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 ② 건축물대장의 제조면적이 100㎡이상~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사업장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이자보전) 3%
- (대출기간) 1년거치 약정상환
- (융자한도액)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 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0백만원
	3억~ 30억 미만	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시·군 소관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조2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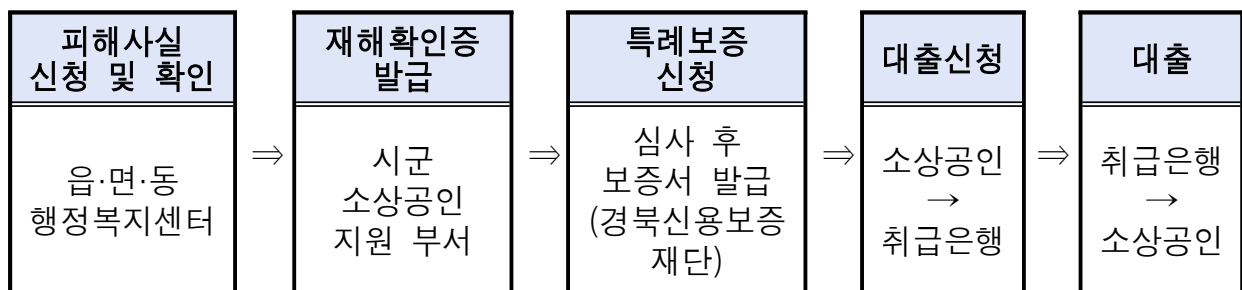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및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가능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지역경제과에서 재해확인증 발급(피해 확인된 업체 대상)
- 재해확인증 지참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신청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안동,의성,청송,영양) ☎054-856-7030, 포항지점(영덕) ☎054-276-1877)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 취급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 지원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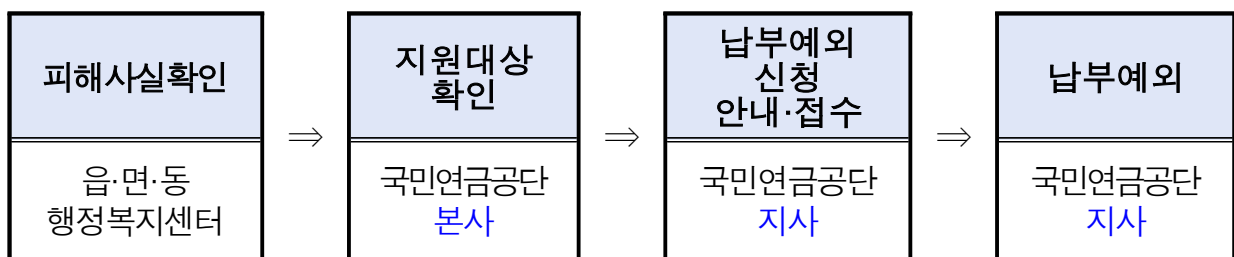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자
 -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 지원내용

-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이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보험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 확인

□ 지원절차



-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지원대상에게 납부예외 신청 안내 및 접수
안동지사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관할), 포항지사(영덕군 관할)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 지원근거

- 「수도법」제12조의2, 「하수도법」제65조
- 「수도급수 조례」제41조 및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 ※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피해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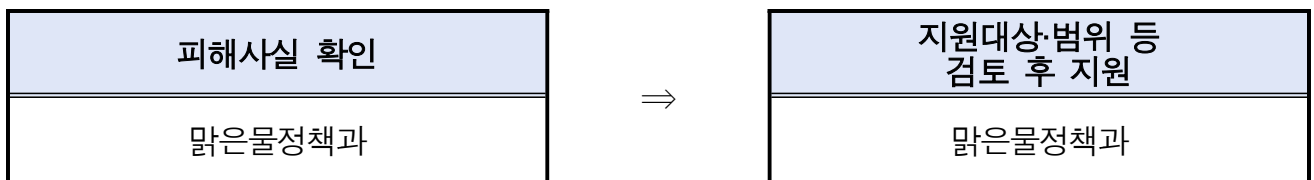
<상수도>

- 상수도 사용요금의 1/2을 6개월간 감면(기본요금 제외)
- ※ 출산가정, 가정용 감면과 중복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함

<하수도>

- 하수도 사용요금의 1/2을 6개월간 감면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맑은물정책과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된 피해 사실 확인

□ 지원개요

-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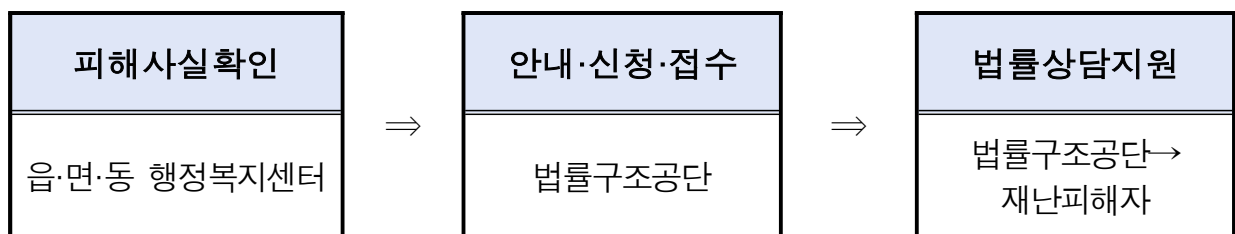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산불재난 주민 누구나

□ 지원내용

- 법률상담(대면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등)
 - * 대면(화상)상담 : 국번없이 132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안동출장소 방문예약 필수
 -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 5분 이내 간단한 상담 가능
- 소송구조(민사, 가사, 행정사건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무료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농어업인, 소상공인),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무료
 -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장애인, 국가유공자, 소규모 중소기업인 등) 무료
 - * 그 외 유료 소송지원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접수 등(법률상담신청)

※ 통합지원센터 운영시 설치 장소 현장 상담 또는 전담자에 의한 전화 상담

□ 지원근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4조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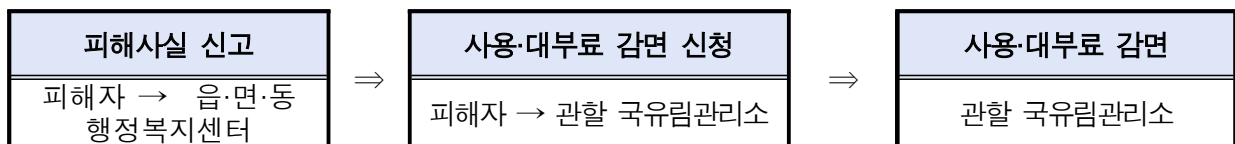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대부(사용허가)지 내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수대부자

□ 지원내용

- 피해를 입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사용·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 지원절차

- 재난을 입은 수대부자에게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산림녹지과)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 관리소로 문의

※ 피해지역별 국유림관리소 연락처

피해지역	국유림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안동시, 의성군	영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054-630-4020~4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영덕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054-730-8120~3

□ 지원대상

- 재난(산불 등) 피해 농가

□ 지원내용

- 수리비 무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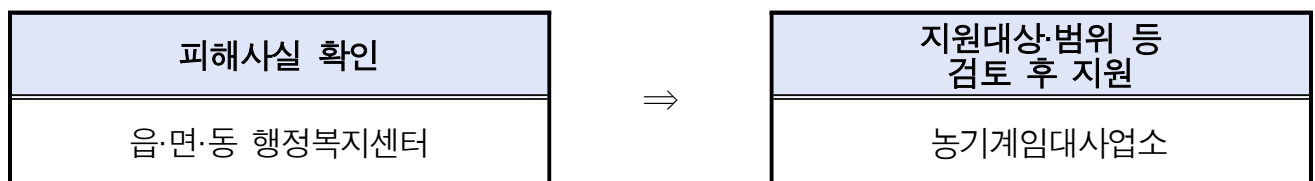
※ 농기계 순회수리 및 수리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

- 부품 금액 15천원 이하인 경우 무상으로 하며,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징수한다. 단, 농기계회사 등에게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리할 경우 무상지원한다.

□ 지원기간

- 재난 발생일부터 재난 지원대책 운영기간 종료 시 까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지원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예규)제23조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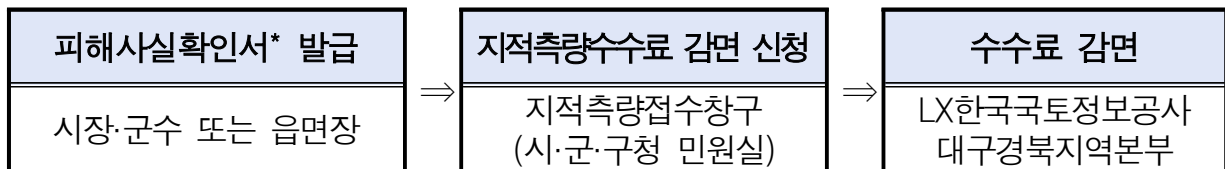
-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시 지적 측량이 필요한 자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불가
-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 * 특별재난지역 기초 지자체장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 지원내용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 100%, 그 외 토지 등 50%

※ 특별재난선포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절차



*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신청방법

- (방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방문·신청

지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지적측량접수창구
안동시	안동지사	054-806-7400	054-840-6862
의성군	의성지사	054-511-7720	054-511-7747
청송군	청송영양지사	054-519-7780	054-874-5067
영양군		054-525-7650	054-683-3517
영덕군	영덕지사	054-513-7630	054-513-7648

-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

□ 지원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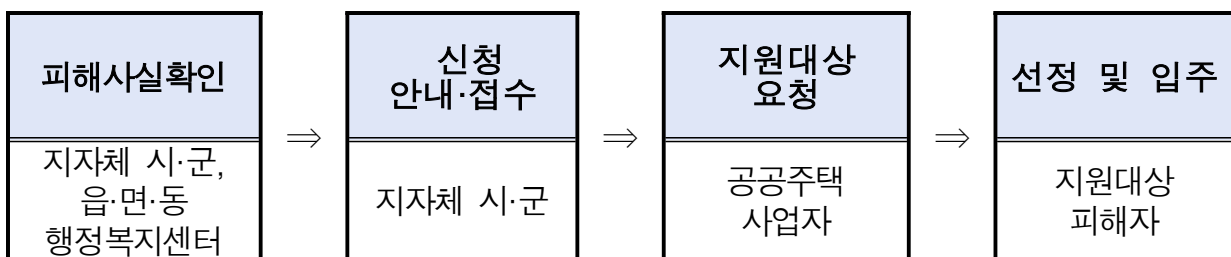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내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을 임시사용

- (사용기간) 6개월 사용이 원칙이나, 해당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하면 연장 가능
- (임대료) 임시사용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계 적용
- (기타)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장과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의로 결정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입주희망자는 지자체 시·군 유선 또는 방문신청
(물량 확보 및 대상자 확정시 피해사실확인서 등 제출 필요)

□ 지원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재난지역 피해자 등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심리·정서 지원) 심리·정서 회복지원 상담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위기 가족이 심리적 안정 지원(보듬매니저 파견 등)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 가능
- (긴급돌봄 지원) ▲위기가족의 수요에 따라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개인 활동)를 지원하기 위한 보듬매니저 파견, ▲양육돌봄, 노인돌봄, 동행서비스 등을 위한 돌봄인력(보듬매니저, 아이돌보미) 파견
- (자조모임 등 지원 연계)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 종료 후 가족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연계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가족센터 방문 및 유선 상담 후 결정(가족센터 대표전화 : ☎1577-9337)

<지역별 전화번호>

안동시 가족센터 : ☎054-853-3111/ 안동시 경북대로 440, 3층

영덕군 가족센터 : ☎054-730-7383/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 영덕문화체육센터 내 여성회관 2층

의성군 가족센터 : ☎054-832-5440/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46

청송군 가족센터 : ☎054-870-6790/ 청송군 청송읍 복지타운길 77

□ 지원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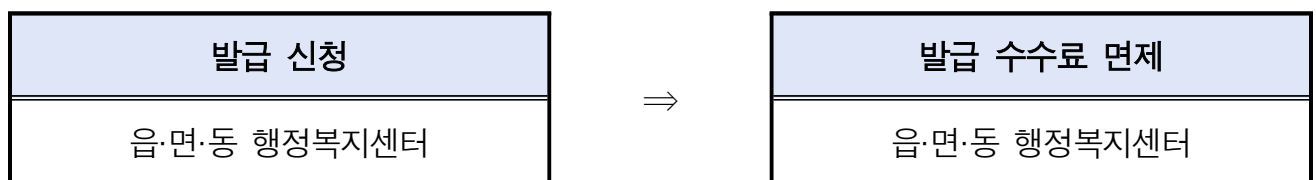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등을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600원) 면제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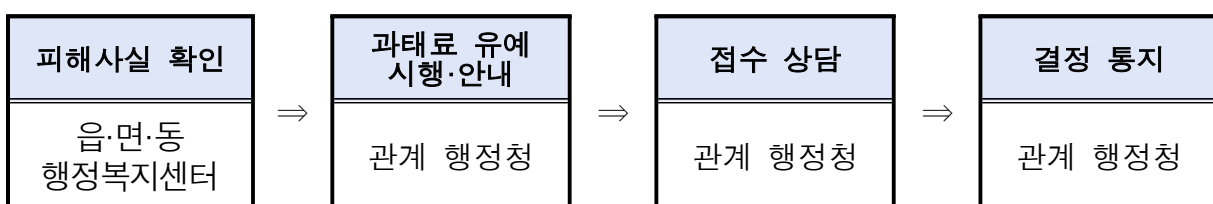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지역으로 재난피해를 당한 사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자(※ 개별법령에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 규정이 있는 과태료)

□ 지원내용

- 과태료의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최대 9개월,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개월 내 연장 가능)
- ※ 세부적인 분할납부의 횟수, 금액, 납부기일 연기기간은 해당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사유를 고려하여 관계 행정청이 결정

□ 지원절차



- 재난발생 →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신청(피해자 → 관계 행정청) →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여부 결정·통지(관계 행정청, 20일 이내 통지)
- ※ 관계 행정청은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분할 납부 금액 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관계 행정청 방문·신청

□ 지원근거

- 「자동차관리법」제4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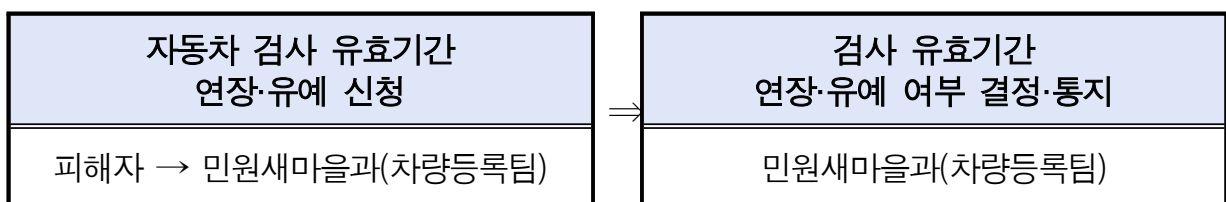
- 천재지변(산불 등 재난)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

□ 지원내용

-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 정기검사, 튜닝검사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방문·신청

□ 지원근거

- 「병역법」제61조,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

□ 지원대상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가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지원내용

-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 ※ 연기원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전화로 연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연기 접수
지역병무(지)청

⇒

연기 처리 및 결과 안내
지역병무(지)청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현역·상근입영, 사회복무, 대체역종 선택 → 연기(원) 신청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 지방병무청 유선 신청

□ 지원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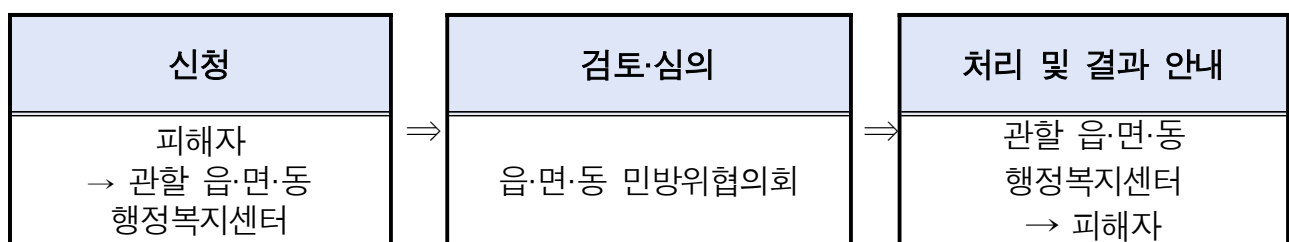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 ※ 단,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당해 연도의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의결)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 및 의결 불필요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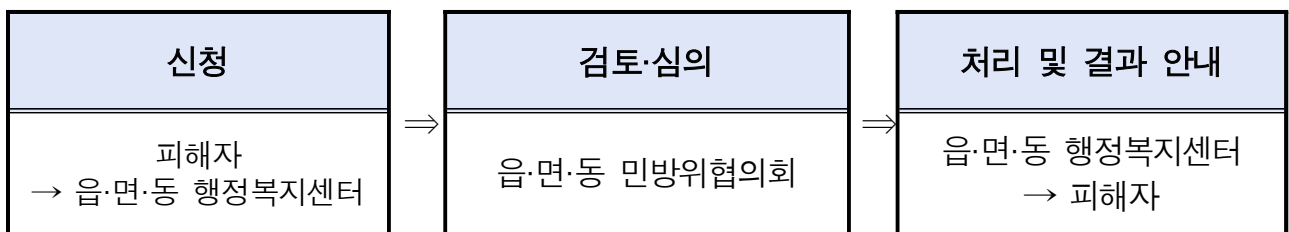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 ※ 단,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당해 연도의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의결)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 및 의결 불필요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 「예비군법」 제5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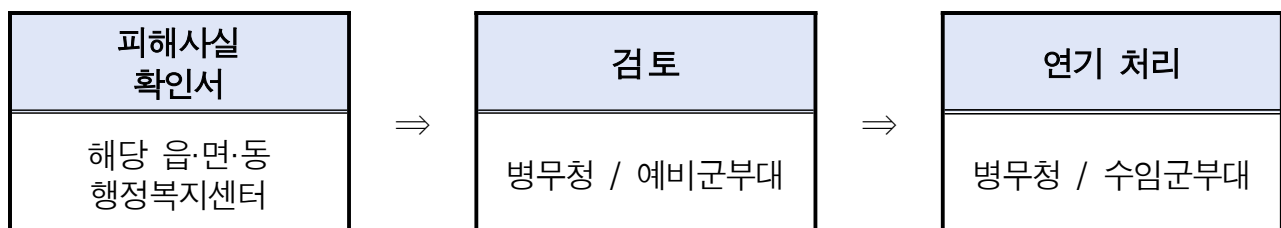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자
 - 일반 피해지역(재난사태 포함)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예비군
- ※ 단,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당해 연도의 병력동원 훈련 연기(병무청)
- 당해 연도의 예비군 훈련 연기(국방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우편법」제26조, 동법 시행규칙 105조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7조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6조, 제5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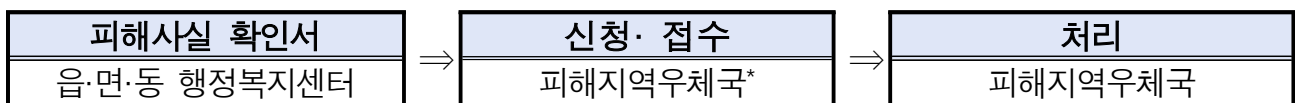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우체국 고객

□ 지원내용

- (구호우편물) ①구호기관* 상호 간 또는 ②구호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 구호우편물 6개월 간 무료 취급
 - * 군, 행정기관 또는 이재민의 구호를 목적으로 하여 특별히 설치된 기관(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 조직 등)
- (우체국예금) 통장 재발행, 타행 계좌 송금(창구, 스마트뱅킹), 우체국 ATM 현금인출 수수료 6개월 면제
 -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우체국 전산망에 등록된 고객주소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나, 타행계좌 송금 등 고객정보를 활용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신분증 지참 방문 필요
- (우체국보험) 우체국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6개월 납입 유예(재해확인증 필요)

□ 지원절차 보험고객에 한



* 피해지역우체국 : 안동, 의성, 영덕, 청송, 영양

※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는 우체국에 재해확인증 발급 후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역별 우체국 연락처

안동우체국	의성우체국	영덕우체국	청송우체국	영양우체국
054-850-3009	054-830-3012	054-730-2031	054-870-2012	054-682-0001

□ 지원근거

- 「보훈기금법」제5조 및 「보훈기금법 시행령」제6조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부 훈령)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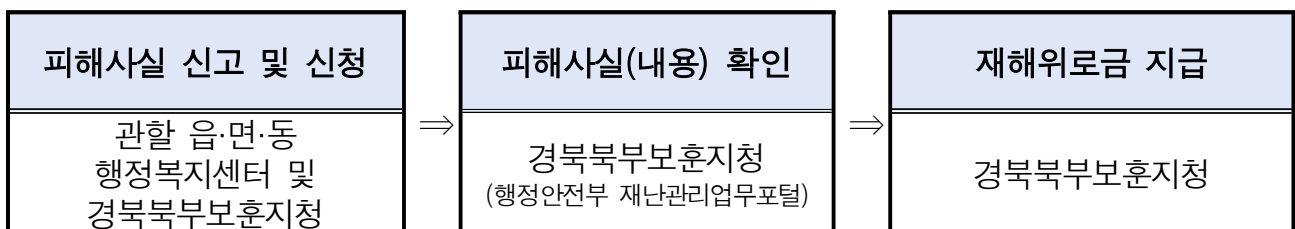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적용대상자

□ 지원내용

피해유형	피해기준	지원액(만원)
인명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의 사망·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 사망·실종 500 · 부상 30
주택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 전파 500 · 반파 250 · 침수 50
기타 재산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 피해금액 1,000만원 초과 시 50 · 피해금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시 30
공동이용 시설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복지광장 등 공동이용시설 피해	· 피해금액 1,000만원 초과 시 500 · 피해금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시 250

※ 인명·주택피해와 기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급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지자체(읍·면·동) 피해사실신고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지원대상

- 화재, 태풍 등 재난으로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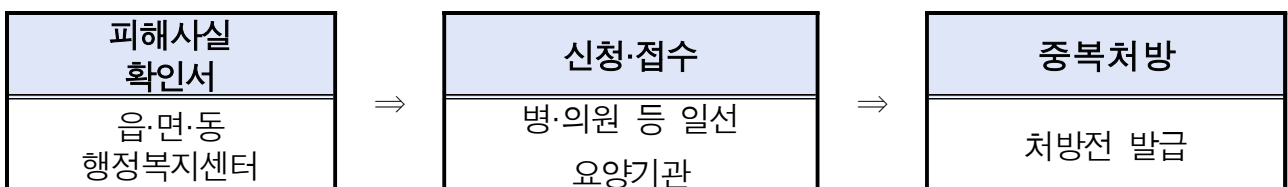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복용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급여 지원

* 의약품 안전사용 시스템(DUR) 통해 급여삭감 문제 없음을 안내(3.25)

□ 지원절차

- (피해주민) 가까운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의약품 재처방·조제 신청
(단, 진료비, 약제비, 조제료 등 본인부담 비용은 발생)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안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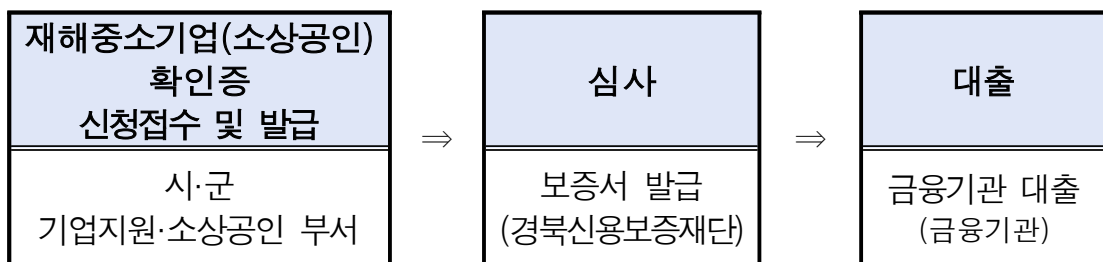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보증한도) 3억원 이내
※ 세부 보증한도·기준 등은 사업장 소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문의
- (보증비율) 전액보증 100% / (보증료율) 특별재난지역 0.1%
- (지원가능 자금) 운전자금
* 다만,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가능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재해확인증 지참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신청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안동,의성,청송,영양) ☎054-856-7030, 포항지점(영덕)
☎054-276-1877)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통사항임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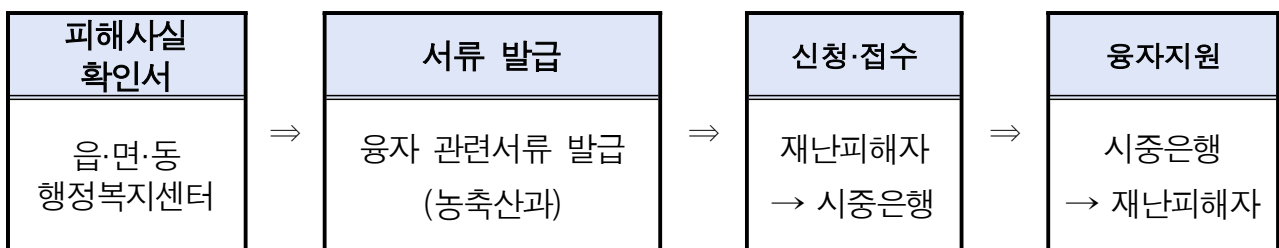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농업·어업·임업인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5년(거치기간 5년 포함)
 - (대출한도) 농·어·임업 재해복구비(보조, 융자, 자부담) 중 융자금
-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농·어·임업별 융자금 확인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신고 후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 융자 신청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재난피해자가 직접 취급 은행(농협, 수협, 산림조합)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재난(산불 등) 피해 농가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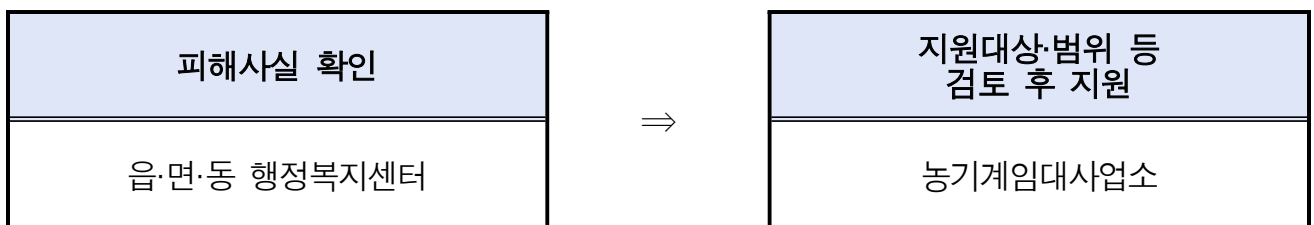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업기계의 임대료 및 운송료 전액 감면 지원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4

□ 지원기간

- 재난 발생일로부터 재난 지원대책 운영기간 종료 시 까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지원대상

- 산불재해 건축물

□ 지원기간

- 2025. 3. 27. ~ 종료 결정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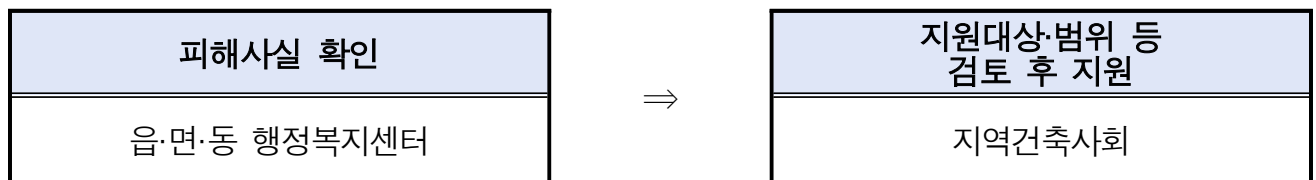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건축신고대상건축물: 설계비 할인
- 건축허가대상건축물: 설계, 감리비 할인

※ 추가비용 관련 각 사무소별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처리비용 및 전기 설비 등의 외주용역비 별도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지역건축사회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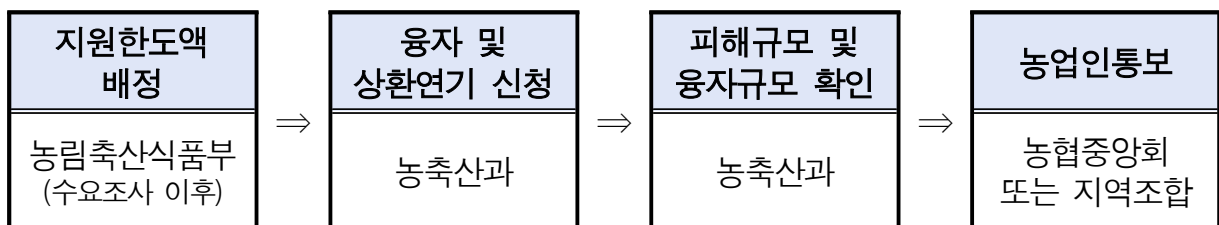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산불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지원내용

- 재해대책 경영자금대출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금액(대출기간 1년)
 - 지원한도액 = 피해물량 * 품목별 소요 경영비 (1회전)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 기존에 농협에서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고시 2022-120호)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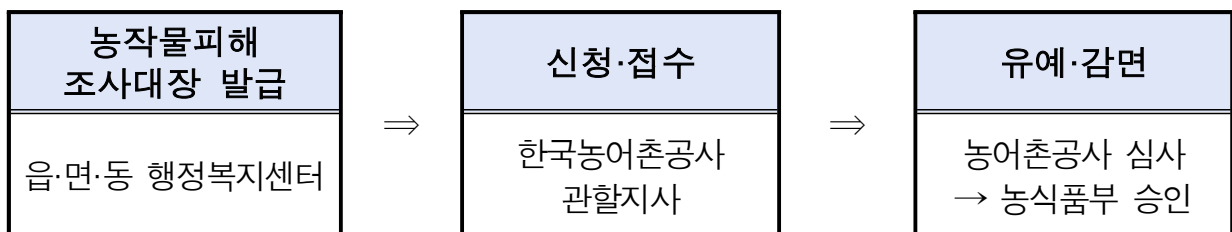
-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피해가 있고,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 농가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

□ 지원내용

-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농가단위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지원, 임차료 감면 추가 지원
- (원리금 상환연기) 농가단위피해율 50% 이상(2년간), 30%~50% 미만(1년간)
- (임대료 감면) 농가단위피해율에 따라 45%~100%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농작물피해 조사대장 발급 후,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 신청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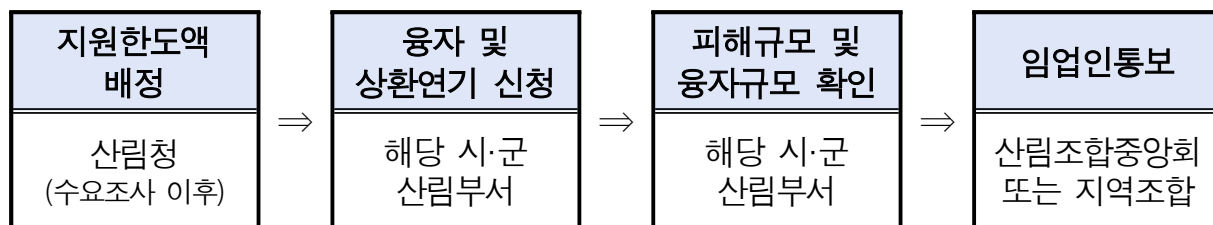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산불 등) 피해를 입은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 지원내용

- 재해대책 경영자금대출
 - 임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금액(대출기간 2년)
 - 지원한도액 = 피해물량 * 품목별 소요 경영비 (1회전)
- 임업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 기존에 산림조합에서 대출받은 임업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역별 산림조합 연락처

산림조합	전화번호(대표)	산림조합	전화번호(대표)
안동시산림조합	054-857-1181	청송군산림조합	054-872-7190
의성군산림조합	054-834-7101~2	영양군산림조합	054-682-8476
영덕군산림조합	054-733-0100	-	-

□ 보험개요

- (정의)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등록 외국인 포함)
※ 주민등록 기준 지자체에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 제정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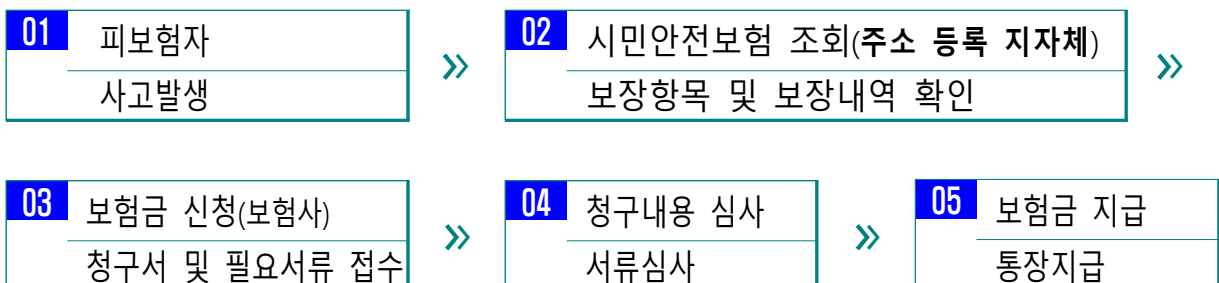
- (보장항목) 기본보장항목 37종(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등)과 지역특성(도시, 농·어촌 등) 고려하여 지자체가 별도 가입한 기타 보장항목 18종 운영
- (보장한도) 가입항목별·지역별 최소 1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등
《 경북지역 산불 사고 관련 》

보장항목	사회재난 사망	화재 사망	사회재난 후유장해	화재 후유장해	화재 진단 위로금(수술비)
보장한도	10백만원 ~20백만원	20백만원 ~50백만원	10백만원 ~50백만원	20백만원 ~50백만원	1백만원

- 지원대상 : 피보험자 또는 사망 시 법적상속인, 부상자

□ 신청방법 및 절차

- 전화상담(콜센터)



※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사망 시 법적상속인 보험사 청구

□ 보장항목 세부내용

사회재난 사망	화재 사망	사회재난 후유장해	화재 후유장해	화재 진단 위로금(수술비)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화재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수술받는 경우
※ 보장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의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규칙 > 시민안전공제 약관 ※ 후유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한다.				

□ 경북 관련 시·구 및 공제회 연락처

시도	시·구	가입 기관	연 락 처	비 고
경북	안동시(안전재난과) 054-840-539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02-3274-2023	
경북	청송군(안전정책과) 054-870-6781			
경북	영양군(건설안전과) 054-680-6672			
경북	영덕군(안전재난과) 054-730-6157			
경북	의성군(안전건설과) 054-830-6095			

※ 경북 보험가입 현황 확인

- 재난보험24(www.ins24.go.kr)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조회

□ 지원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4조제3항, 제15조제1항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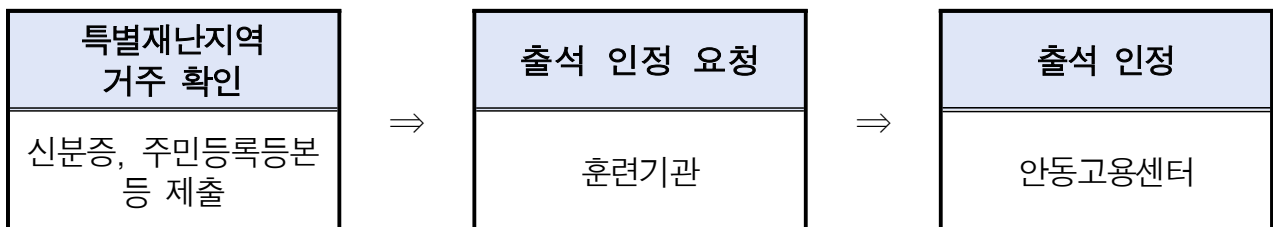
- 특별재난지역 거주 직업훈련 참여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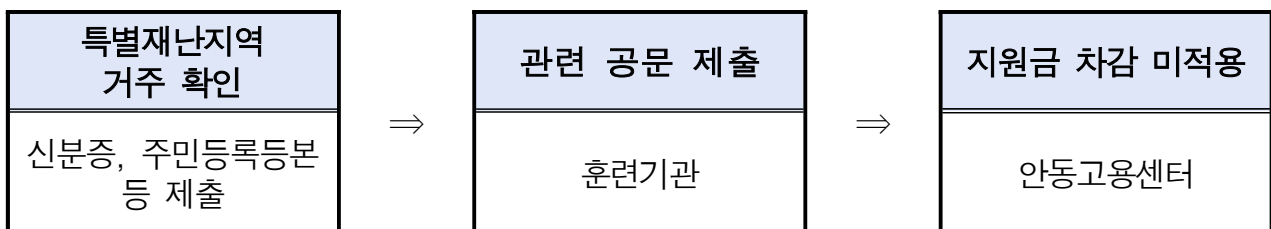
- 실업자 · 재직자의 훈련참여 출석 요건 완화(별도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을 받지 않은 날에 대하여 출석인정 가능)
- 중도탈락시 불이익 배제(지원금 차감 미적용)

□ 지원절차

- (출석요건완화)



- (중도탈락 불이익 배제)



□ 신청방법

- 훈련기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시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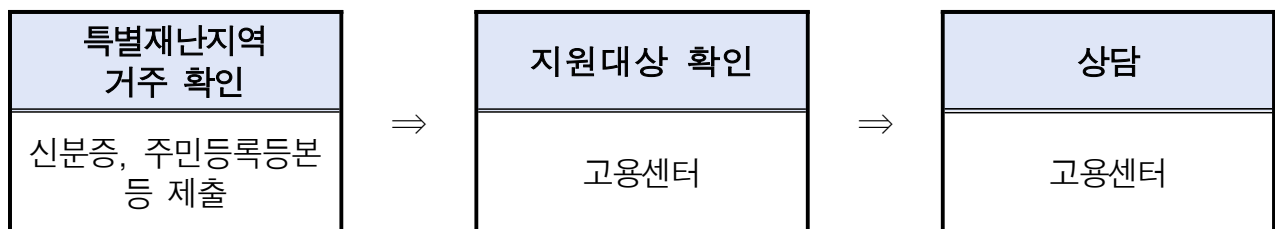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거주 실업자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횟수 확대(현 6회 한도 -> 심리안정시까지)
- 정신건강복지센터 · 마음투자지원사업 적극 연계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전화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0조(수급자격자의 결정·통지), 제12조(취업활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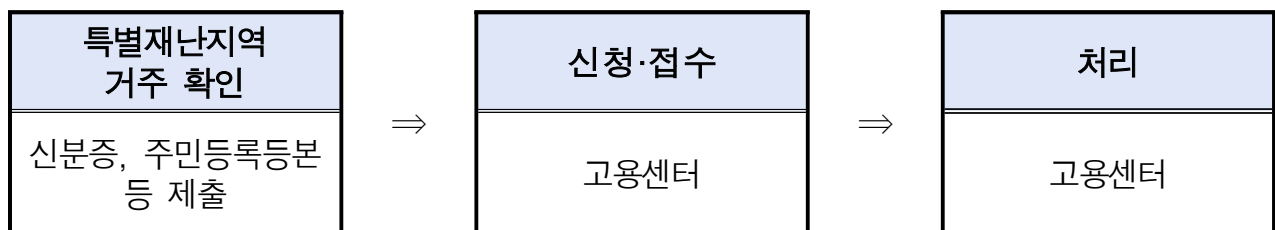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거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 및 참여자

□ 지원내용

- 수급자격심사·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연장(7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요건 완화(대면 3회 → 유선 2회)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지역고용센터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2호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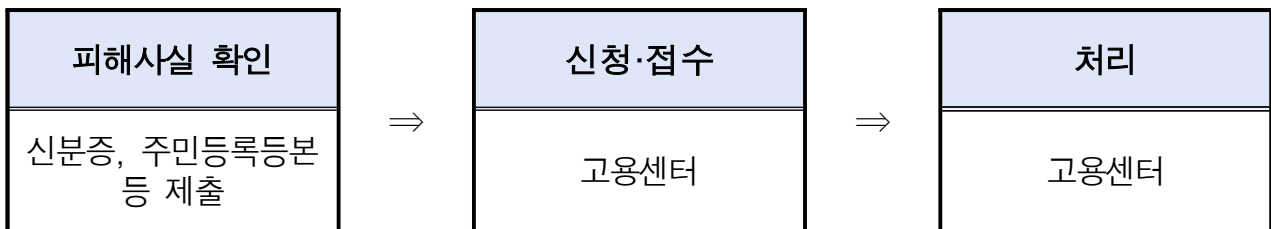
- 특별재난지역 거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 지원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 인정 기준 요건 완화

* 온라인 실업인정 전환('25.4.8.까지,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지역고용센터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21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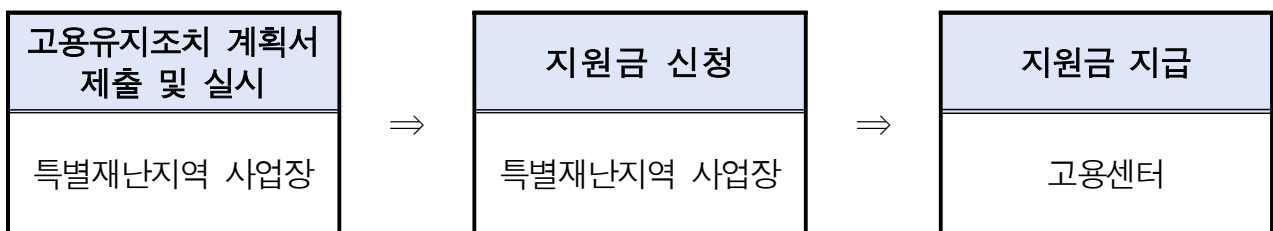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내 소재 사업장 중 산불피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에 대해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연 180일 한도, 1인당 1일 최대 6.6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하여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 지원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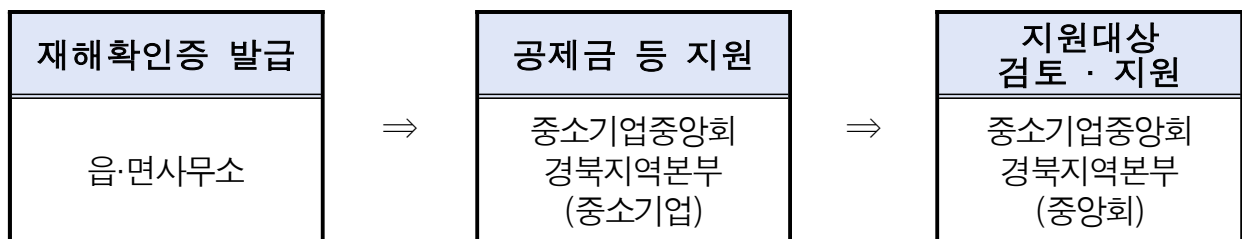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산불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

□ 지원내용

구 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 상	산불피해를 입은 가입자	
지원내용	① 재해사유 공제금 지급 ② 무이자 대출(최대 2천만원) ③ 부금납부 6개월 유예	① 대출금리 2%p 인하 (부금최대 3배) ② 부금납부 6개월 유예
구비서류	피해사실확인서 및 재해중소기업확인증	피해사실확인서 및 재해중소기업확인증 + 대출구비서류 (대출희망시)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054-655-8314)에 지원 신청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대상

- 재난(산불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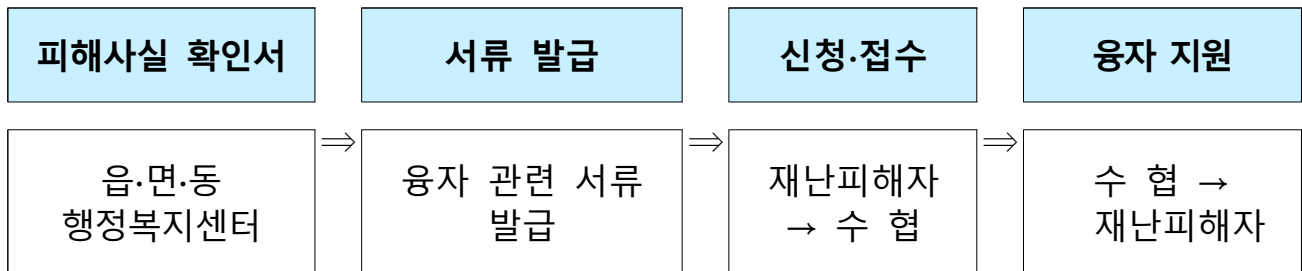
- 어업인 긴급경영자금 대출

(용자한도) 피해복구 자부담 금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100백만원

(용자조건) 연 1.8%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용자기간) 1년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수협은행	전화번호(대표)	회원조합	전화번호(대표)
수 산 해 양 금 융 부	02-2240-8521	강구수협	054-732-9112
경 북 지 역 금 융 본 부	053-740-7541	영덕북부수협	054-732-5001

□ 지원근거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54조, 제56조
- 보험규약 제42조~제44조, 제114조, 제128조~제131조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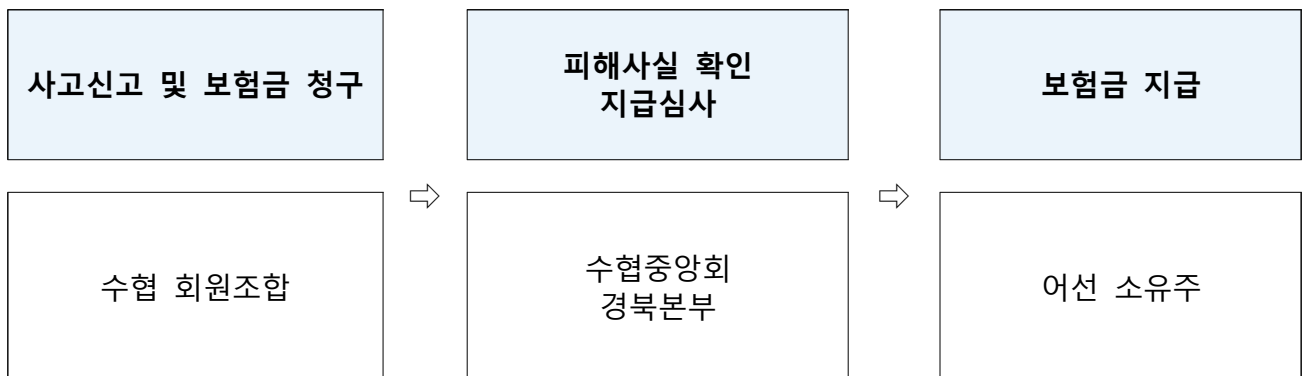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주

□ 지원내용

-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화재로 인한 어선의 선체, 기관 및 의장품 가입한도내 손해보상)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어선보험 가입 수협(회원조합) 영업점에 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

□ 지원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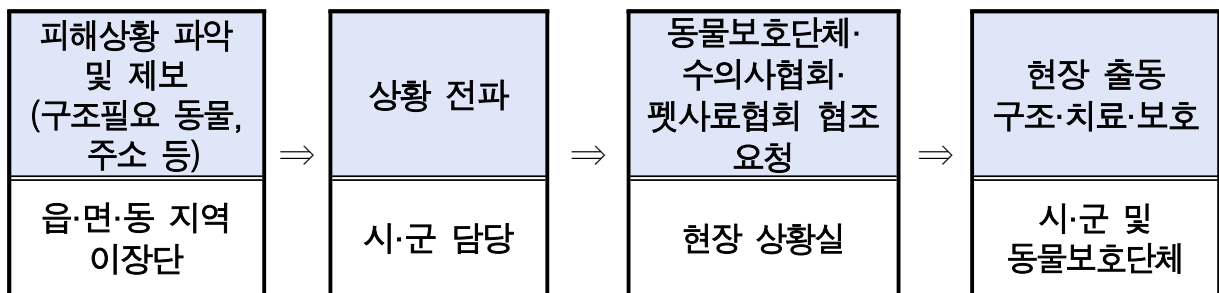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산불 등)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 등의 보호자

□ 지원내용

- 사료, 소독약, 의약품 등 지원
- 수의사회 지원을 통한 치료·검사 지원
- 야생동물, 유기·유실 동물 등에 대한 구조 및 보호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지역 이장단을 통해 피해 주소, 상황 등을 신청 접수
- 구조가 필요한 동물 발견 시 지역 이장단에 피해상황 신고 및 제보

□ 지원근거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가(법인) * 특별재난지역: 의성(324), 안동 청송 영양 영덕(327)

□ 지원내용

①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1년 연장

- (연장대상) 피해 농어가(법인) 중 상환 연장 신청자

②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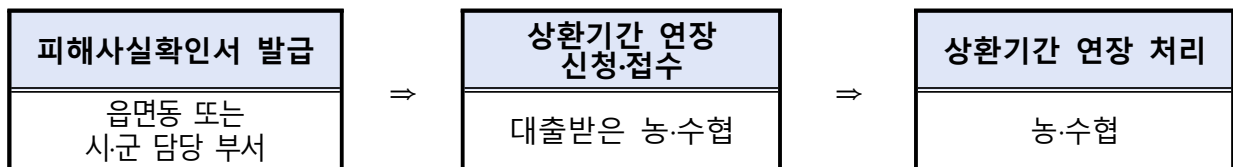
- (감면내용) 기존 상환 이자 1% 일괄 감면 (농어가 별도 신청 없음)

③ 긴급 경영안정자금 무이자 지원

- (지원금액) 피해 농어가(법인) 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2년 일시상환(무이자) ※ 기존 기금 지원 받았더라도 신청 가능
- (자금용도) 농어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 및 시설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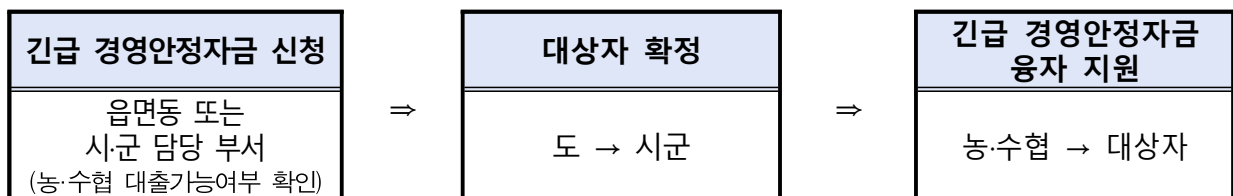
□ 지원절차

<상환기간 연장>



<'25년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감면> : 시·군(읍면동), 농·수협 확인 후 일괄 감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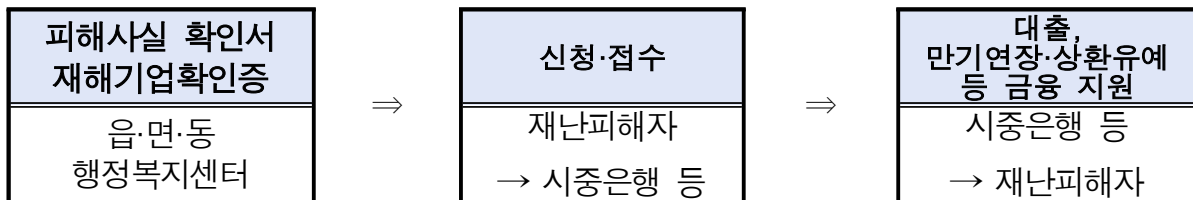
- (상환기간 연장) 대출받은 농·수협 방문 신청(~11월 30일)
- (긴급 경영안정자금)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차: ~4월 30일 2차: ~5월 30일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중소기업(법인)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신고 후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재해중소기업확인증)를 지참하여 재난피해자가 직접 취급 금융기관(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개인)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최대 1년),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업)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1332)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수출입은행	☎ 02-3779-6259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농협중앙회	☎ 1661-21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신협중앙회	☎ 1566-60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참고1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기관

☞ 농협은행, 농협 조합,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대출 대상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지역의 피해 농업인, 상인, 주민
대출 기간	◆ 최장 5년
지원 규모	◆ 최대 1억원(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한 피해액 범위 내)
운용 기간	◆ 별도 기준 없음
적용 이율	◆ 최대 2.0%(농업인인 경우 2.6%) 이내 우대금리 적용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농협조합]

대출 대상	◆ 농업인 조합원
대출 기간	◆ 1년 (만기 연장불가)
지원 규모	◆ 세대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운용 기간	◆ '25.3.25. ~ 6.30.
적용 이율	◆ 대고객금리 5.0% ('25.4.3.기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대출심사 필요서류 등
비 고	◆ 대출이자 농협중앙회 이차보전

[신한은행]

대출 대상	◆ '25년 3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
대출 기간	◆ 2025.3.24. ~2025.7.31
지원 규모	◆ 차주당 2천만원 이내 (DSR범위내)
운용 기간	◆ 2025.3.24. ~2025.7.31
적용 이율	◆ - 주택(부동산)담보[만기일시] : 최대 0.5% - 주택(부동산)담보[분할상환] : 최대 0.1% - 전세자금대출 : 최대 0.3% - 신용대출(기타대출) : 최대 1.5% ☞ 고객 산출금리에서 지원 폭 추가인하 ☞ 가산금리 1bp미만 적용 불가 ☞ 기금대출 등 정책상품, 중도금·이주비 적용 불가
필요 서류	◆ (지자체 발급)재해피해확인서 또는 은행직원 현장답사 확인

[우리은행]

대출 대상	◆ 개인고객
대출 기간	◆ 25.03.24~25.06.02
지원 규모	◆ 1인당 최대 2천만원
운용 기간	◆ 별도 기준 없음
적용 이율	◆ 대출금리 최대 1.0% 범위 內 감면
필요 서류	◆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 피해사진, 영업점 현장답사 中 택 1)

[하나은행]

대출 대상	◆ '25년 전국적인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 ① 관할 지자체로부터 피해가 확인되는 손님 또는 ② 영업점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가 확인되는 손님(영업점 신청의견에 해당내용 기재)
대출 기간	◆ 일반 내규에 따름
지원 규모	◆ 5천만원 內 긴급생활안정자금
운용 기간	◆ 별도 기준 없음
적용 이율	◆ 최대 1.0% 이내 우대금리 제공
필요 서류	◆ 피해 확인 가능한 모든 서류 및 여신 일반 서류

[기업은행]

대출 대상	◆ '25년 산불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
대출 기간	◆ 15년 이내
지원 규모	◆ 고객별 최고 3천만원 이내, 총 한도 500억원
운용 기간	◆ '25.3.24.~'25.12.31.
적용 이율	◆ 1.0%p 추가 금리감면 가능
필요 서류	◆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 또는 은행양식으로 작성된 「피해사실확인서」
비 고	◆ 긴급생계안정자금 외에도 대출금 만기연장 특례 운용 - 대출금 기간연장 시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 기간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할부금 상환유예 가능(최대 6개월)

[국민은행]

대출 대상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고객
대출 기간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 규모	◆ 고객별 최고 2천만원 이내
운용 기간	◆ 일시:1년 / 분할:1~5년(담보대출은 1~35년)
적용 이율	◆ 신용MOR+1.0%p=3.84% / 담보MOR+0.5%p=3.34% ('25.4.3 기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행정관청발급)

[수협은행]

대출 대상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고객
대출 기간	◆ 일반 내규에 따름
지원 규모	◆ 1인당 최대 2천만원
운용 기간	◆ ~'25.12.31.
적용 이율	◆ ~'25.12.31.
필요 서류	◆ 1%p~1.5%p 금리 우대
비 고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입증 확인 서류

[아이엠뱅크]

대출 대상	◆ 관할 기초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 3개월 이내인 자 중 당행 여신운용지침 상 여신의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규모	◆ 총 500억원
운용 기간	◆ 2025.04.03.~별도통보시까지
적용 이율	◆ 최대 1.0% 금리 감면 가능
필요 서류	◆ 재해피해확인서

[부산은행]

대출 대상	◆ 산불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대출 기간	◆ 만기일시상환: 1년 이내 / 할부, 분할상환:최장 10년 이내
지원 규모	◆ 차주당 2천만원 이내
운용 기간	◆ 2025.3.26.~별도통지시까지
적용 이율	◆ 산출금리에서 최대 1% 범위내 감면(1년간)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등

[전북은행]

대출 대상	◆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받은 개인 고객
대출 기간	◆ 1년이상 10년 이내
지원 규모	◆ 전체 취급한도 1,000억원
운용 기간	◆ 2025년 中 (동일 재해인 경우)
적용 이율	◆ 시스템 산출 금리 적용하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금리 감면 가능
필요 서류	◆ 재해피해사실확인서 外 대출 심사 서류

[경남은행]

대출 대상	◆ 산불 등과 관련하여 재산 피해를 입은 개인
대출 기간	◆ 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 / 분할(할부)상환방식 : 5년 이내
지원 규모	◆ 2천만원 이내 (피해금액이내)
운용 기간	◆ 별도 통지시까지
적용 이율	◆ 최대 1.0%p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입증 서류 등

참고2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금융기관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대출 대상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지역의 피해 농업인, 상인, 주민, 중소기업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중소기업은 20년 이내), 운전자금 : 5년 이내
지원 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 (피해규모 범위 내)
운용 기간	◆ 2025.3.24. ~ 2025.12.31.
적용 이율	◆ 최대 2.0%p 금리 우대 (농업인의 경우 최대 2.6%p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입증 확인 서류

[신한은행]

대출 대상	◆ '25년 3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및 협력기업
대출 기간	◆ 2025.3.24. ~ 2025.7.31.
지원 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 (피해규모 범위 내)
운용 기간	◆ 2025.3.24. ~ 2025.7.31.
적용 이율	◆ 1.5%p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은행직원 현장답사 확인

[우리은행]

대출 대상	◆ 화재 피해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BB0(SOHO 6)등급 이상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기간	◆ 2025.3.24. ~ 2025.6.2.
지원 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 (피해규모 범위 내)
운용 기간	◆ 2025.3.24. ~ 2025.6.2.
적용 이율	◆ 업체별 피해 현황 등 감안하여 적정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입증 확인 서류

[하나은행]

대출 대상	◆ '25년 전국적인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① 관할 지자체로부터 피해가 확인되는 손님 또는 ② 영업점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가 확인되는 손님(영업점 신청의견에 해당내용 기재)
대출 기간	◆ 일반 내규에 따름
지원 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 (피해규모 범위 내)
운용 기간	◆ 별도 통지 시까지
적용 이율	◆ 최대 1.3%p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입증 확인 서류

[기업은행]

대출 대상	◆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 기간	◆ 1년 이내
지원 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 (피해규모 범위 내), 총 지원규모 3,000억원 한도
운용 기간	◆ 2025.3.24. ~ 한도 소진시까지
적용 이율	◆ 최대 1.3%p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입증 확인 서류

[국민은행]

대출 대상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고객
대출 기간	◆ 일반 내규에 따름
지원 규모	◆ 운전자금 : 업체당 5억원 이내(피해규모 범위 내), 시설자금 : 소요자금 범위 내
운용 기간	◆ 별도 통지 시까지
적용 이율	◆ 최대 1.0%p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입증 확인 서류

[수협은행]

대출 대상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기간	◆ 5년 이내
지원 규모	◆ 피해복구 소요자금
운용 기간	◆ ~'25.12.31.
적용 이율	◆ 1%p~1.5%p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입증 확인 서류

[아이엠뱅크]

대출 대상	◆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기간	◆ 5년 이내
지원 규모	◆ 2,000억원 (피해규모 범위 내)
운용 기간	◆ 한도 소진시까지
적용 이율	◆ 최대 1.5%p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재해피해확인서

[부산은행]

대출 대상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지역의 기업
대출 기간	◆ 일반 내규에 따름
지원 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 (피해규모 범위 내)
운용 기간	◆ 별도 통지 시까지
적용 이율	◆ 최대 1.0%p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입증 확인 서류

[전북은행]

대출 대상	◆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기간	◆ 일반 내규에 따름
지원 규모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피해규모 범위 내)
운용 기간	◆ 2025.4.3. ~ 별도 통지 시까지
적용 이율	◆ 최대 1.0%p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입증 확인 서류

[경남은행]

대출 대상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기간	◆ 일반 내규에 따름
지원 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 (피해규모 범위 내)
운용 기간	◆ 별도 통지 시까지
적용 이율	◆ 최대 1.0%p 금리 우대
필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입증 확인 서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대출 대상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중소기업
보증 비율	◆ 90%
보증료율	◆ 0.1%
보증 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피해규모 범위 내)
운용 기간	◆ '25.12.31.
필요 서류	◆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비 고	◆ 특별재난지역 외 피해기업의 경우 보증료율 0.5%, 보증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생존자 조회(손·생보 보험가입내역 통합조회 가능)

- (조회대상) 조회 신청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내역(생명보험은 주계약 기준)
- (조회항목)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계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모집점포, 전화번호 등
- (조회방법)

구분	조회방법	구비서류
통합지원센터 운영 中	센터 방문	• 본인 : 본인 신분증 • 임의 대리인 : ① 방문자 신분증, ② 위임장, ③ 조회 대상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통합지원센터 종료 後	손·생보협회 방문	
	손·생보협회 홈페이지	• 본인 : 본인정보 인증 후 확인

□ 상속인 조회(손·생보 보험가입내역 별도 조회 필요)

- (조회대상) 사망자(피상속인)이 사망기준일자 현재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내역(생명보험은 주계약 기준)
- (조회항목) 보험회사명, 상품명(대출종류), 증권(계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모집점포, 전화번호 등
- (조회방법)

구분	조회방법	구비서류
통합지원센터 운영 中	센터 방문	• 상속인 : ① 상속인 신분증, ②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or 사망확인서 or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 ③ 조회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합지원센터 종료 後	손·생보협회 각각 방문	• 상속인의 대리인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사망확인서류, ③ 조회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⑤ 인감증명서(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의 증명서)

참고

보험협회 위치 및 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주소	지역	전화번호	주소
서울	02)2262-6570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7층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신관)	서울	02)3702-8500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15층 (중학동, 케이트원타워 B동)
부산	051)638-7801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8층 (범천1동, ABL생명빌딩)	수원	031)238-4242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9층 (인계동, 삼성화재 수원사옥)
대구	053)427-8051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남산동, ABL생명빌딩)	부산	051)469-6216	부산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15, 9층 (범일동, KB손해보험빌딩)
광주	062)350-0114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 7층 (양2동, KDB생명빌딩)	광주	062)226-0301	광주시 서구 시청로 30, 6층 (치평동, 삼성화재빌딩)
대전	042)242-7002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55, 14층 (둔산동, 삼성생명빌딩)	대전	042)254-6921	대전시 중구 보문로 268, 9층 (대흥로, KB손해보험빌딩)
원주	033)761-9672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60, 4층 (학성동, 교보생명빌딩)	대구	053)741-1731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5층 (범어동, KB손해보험빌딩)
생명·손해보험협회 제주업무지원센터		전화번호 : 064-759-9938 / 주소 : 제주시 전농로 118 교보생명빌딩 2층)			

* 업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 05:30 (점심시간 오후12:00 ~ 오후 1:00)

Ⅲ. 특별재난지역선포시 분야별 추가 지원(간접지원) 항목별 세부내용

□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및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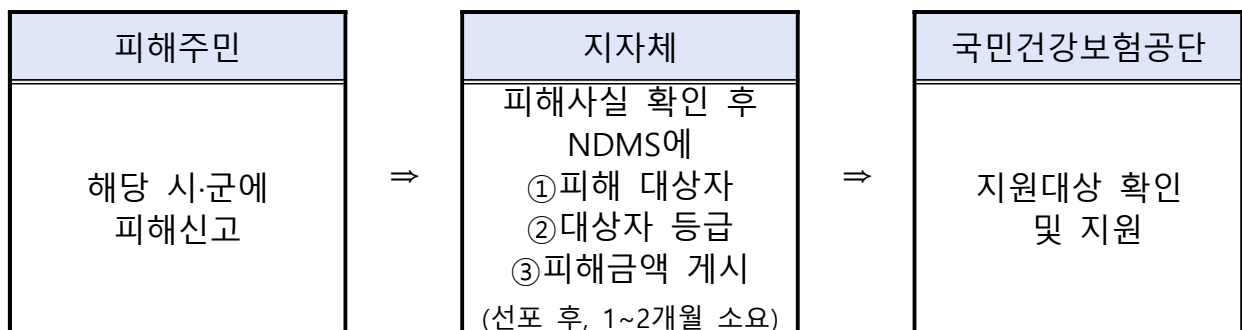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지역요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가입자
- (대상요건)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은 세대 중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피해사실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 세대
 -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 지원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30~50% 경감
 - * 단, 인적(사망, 부상, 실종)·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의 건강보험료 경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지자체에 피해신고 시, 피해신고서에 건보료 경감신청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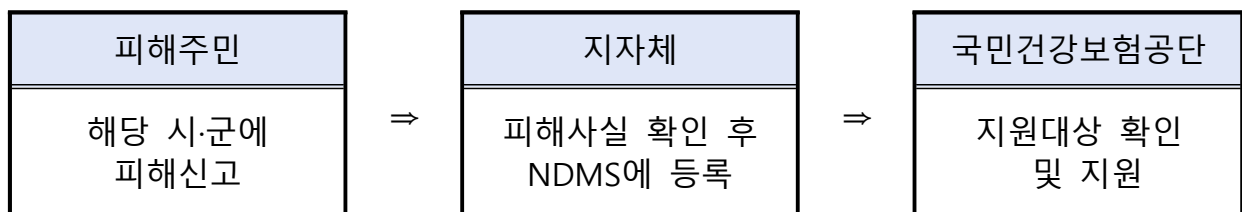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건강보험 사업장 및 가입자)

□ 지원내용

- 6개월분('25. 3.~'25. 8.)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징수 예외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지자체에 피해신고 시, 피해신고서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신청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지원근거

-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 천연가스 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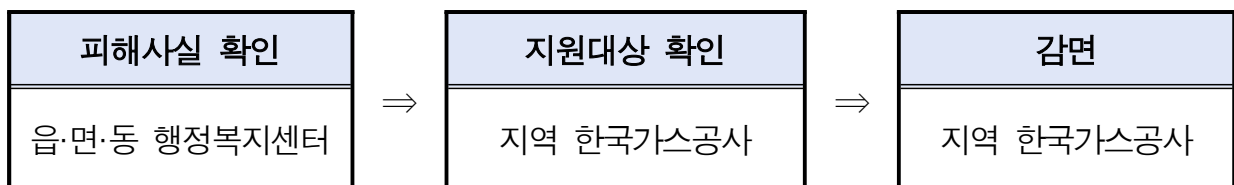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주택피해자(전파·반파)

□ 지원내용

- 주택피해 유형별 1개월분 도시가스요금 정액 차등 지원

구 분	전파	반파
취사용 사용가구	1,680원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12,400원	6,200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열공급규정 제46조(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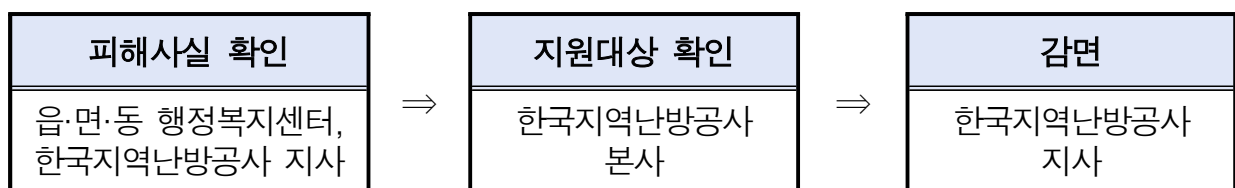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의 지역난방 사용자 중 열사용시설의 피해로 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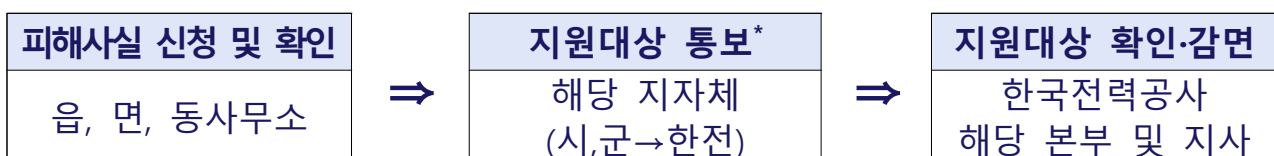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전기요금 감면*)
 - ▷ (대상) 멸실, 파손 건축물에서 전기를 사용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소기업
 - ▷ (기준) 멸실 건축물 1개월분 요금 100% 면제(200만원 한도), 파손 건축물 1개월분 요금 50% 감면(100만원 한도, 단, 주거용 주택용은 100% 감면)
- (지자체가 인정하는 이재민 대피장소)
 - ▷ (대상) 멸실, 파손 건축물이 복구되기전 이재민이 일시적으로 주거하는 건물
 - ▷ (기준) 임시가건물(복구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100% 면제, 호당 월 20만원 한도), 기존 건물 (전년 동월 사용량 초과분 경감)
- (요금 납기연장) 멸실, 파손 건축물에 대한 1개월(미납분 포함) 납기연장
- (시설부담금) 임시 가건물, 멸실·파손 건축물 신규신청 시설부담금 면제
- (전력설비 지원) 피해복구장소 및 대피 장소 긴급전력 무상설치 등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감면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절차



* 해당 지자체는 피해사실 확인후 지원대상자를 한전 해당지사에 송부

□ 지원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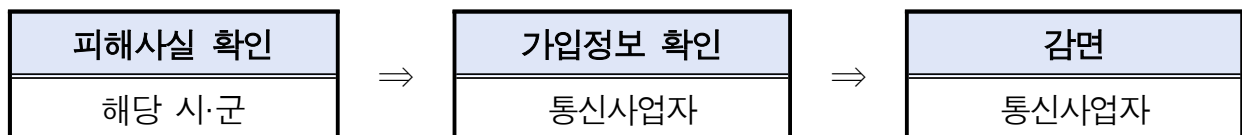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 중 이동전화(SKT, KT, LGU+), 유선전화(시내·인터넷 전화 등),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 ※ 재난등급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요금 지원

□ 지원내용

- (이동전화) 피해가구 세대당 1회선의 요금을 1개월간 최대 12,500원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피해가구 세대당 1회선의 월정액을 1개월간 100% 감면*
- *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를 모두 사용 중이실 경우, 시내전화 1회선과 인터넷 전화 1회선을 각각 감면 가능
- (초고속인터넷) 피해가구 세대당 1회선의 월정액을 1개월간 50% 감면
- (위약금 면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유선통신서비스(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불가하여 해지를 원하실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
- 다만, 산불 대응 업무 과중으로 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늦어질 경우 통신사에 '서비스 이용 정지'를 먼저 신청하시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된 후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면 요금 부과 방지

※ 감면 내용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재난관리부서)에 피해신고(통신사에 별도 신청 불필요)
- ※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는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요금이 감면처리 되기까지는 피해사실 신고 후 약 2~3개월이 소요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 중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서비스 가입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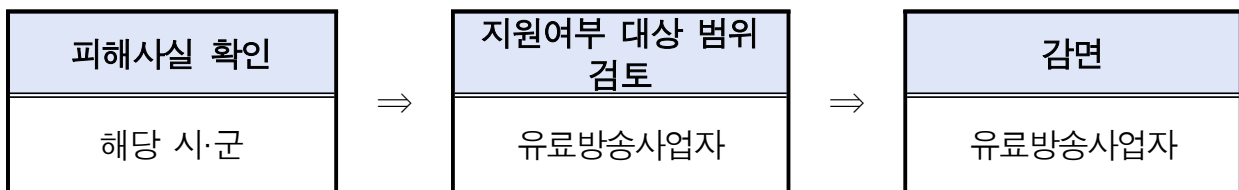
-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사업자 자율적 요금 감면

-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율,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재난관리부서)에 피해신고, 별도 신청 불필요

* 경제기업과 확인 필요

□ 지원근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3조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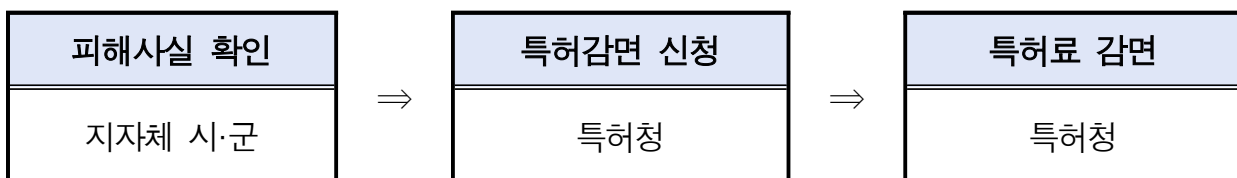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감면대상		감면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등록료
1. 개인	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100분의 90	100분의 70
	나. 65세 이상인 사람		
2. 소상공인	다.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100분의 80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00분의 80	

※ 개인은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하며,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방송법」제64조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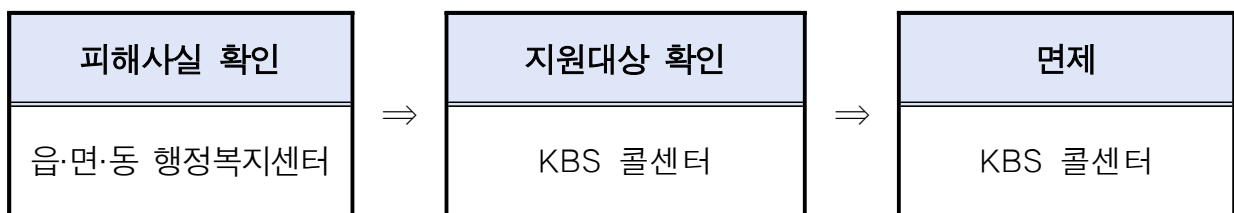
-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

※ 수신료 면제 여부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필요

□ 지원내용

- 특별재난지역 등의 피해 거주민이 소지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방통위 심의·의결로 설정) 면제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전파법」 제67조
- 「전파법 시행령」 제89조
-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무선국 기준」(과기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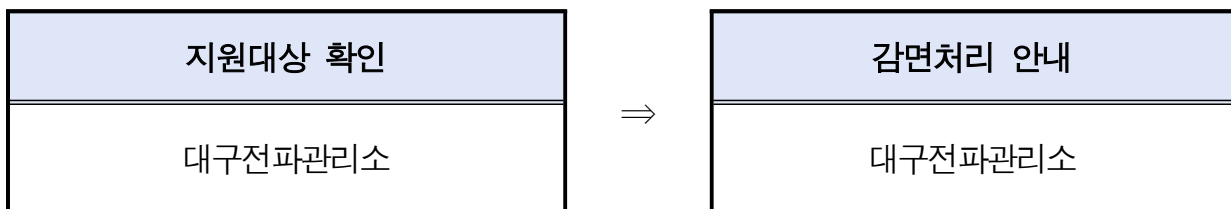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무선국 제외

□ 지원내용

- 2분기 기간의 전파사용료 감면
 - ※ 전파사용료를 일시 납부한 무선국은 다음연도 전파사용료를 감면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지역 관할 전파관리소(대구전파관리소)에서 일괄 감면 처리·안내

□ 지원근거

- 「농지법」 제38조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해 신축·증축·이축을 하려는 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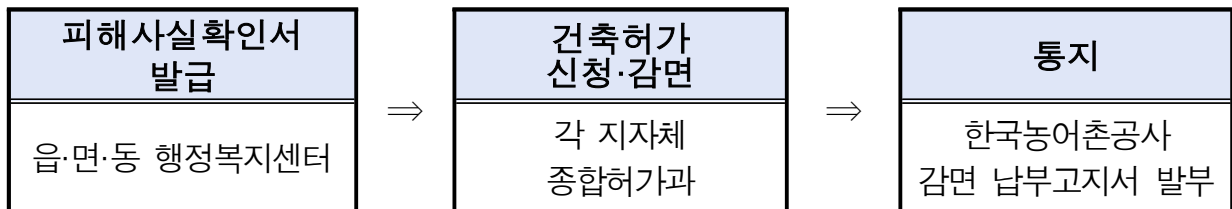
- 단독주택 복구를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해당 부지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농지법 시행령」 [별표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제3호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관할 지자체 문의·발급)를 첨부하여 단독주택 신축·증축·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부서에서 감면사항을 확인하여 감면

※ 부담금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관할 농지 부서에 문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요청

□ 지원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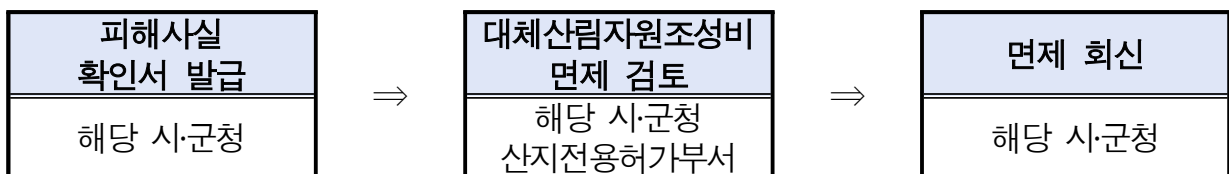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이축하려는 자

□ 지원내용

- 재난피해자의 주택 복구를 위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산지전용허가부서 문의 및 신청

※ 지역별 연락처

시·군·구청	전화번호	시·군·구청	전화번호
안동시(종합허가과)	054-840-6315, 5369 054-840-5362, 6317	청송군(산림자원과)	054-870-6326, 6313 054-870-6312, 6324
의성군(건축허가과)	054-830-6441, 6440, 6445	영양군(산림녹지과)	054-680-6620, 6621
영덕군(산림과)	054-730-6321~6323	-	-

□ 지원근거

- 「병역법」제49조, 「병역법 시행령」제100조2
- 「예비군법」제5조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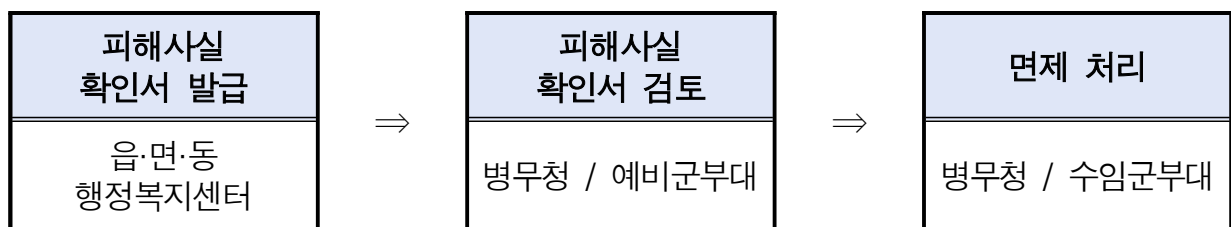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지침으로 적용

□ 지원내용

- 당해연도의 잔여 병력동원훈련 면제(병무청)
- 당해연도의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 면제(병무청/국방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및 신청

□ 지원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0조 및 제6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산불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사망 포함) 발생한 근로자 및 그 유족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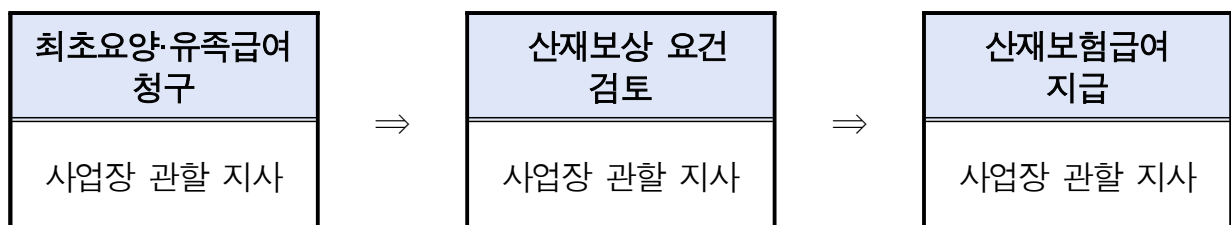
(산재보상 지원)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산불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사망 포함)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절차 적극 안내
- 최초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 시 재해자별 전담자 지정을 통해 신속한 심사 및 이에 따른 보험급여 신속한 지원

(보험급여 종류 및 수급권자)

- 최초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업무상으로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
-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장례비: 업무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해당 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 문의·신청

□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마목

□ 지원내용

- 피해지역 장애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조기기 추가 급여**
 - 기 지급 보조기기과 동일한 품목 재 지급(처방전, 사전승인 절차 생략)
 - ※ 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 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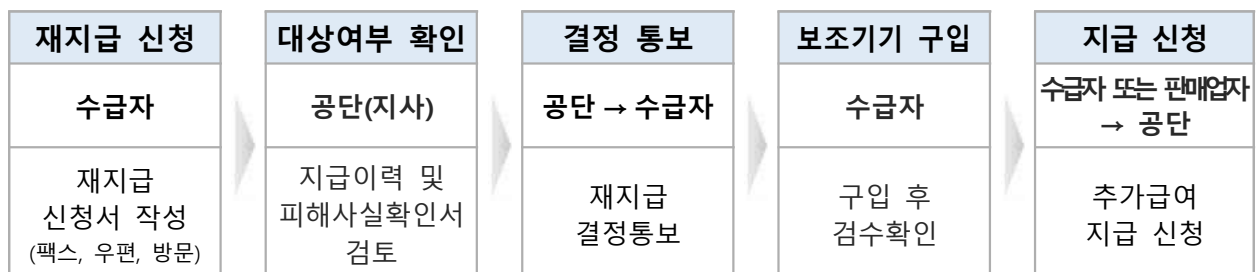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산불로 인해 대피하면서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애인보조기기가 분실·훼손·멸실된 자
 - 보조기기 품목 재지급 기준을 준용하되 기존 처방기간 범위 내 재급여

□ 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 마감시까지

□ 신청절차

- (제출서류) 재지급 신청서 및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처방전, 공단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이전에 지급된 자료로 대체
- (신청방법) 공단 지사 팩스, 우편 또는 방문



□ 지원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2021.8.2.)

□ 지원내용

- 피해지역 거주 어르신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인틀니(재제작) 추가 지원
 - (지원범위) 기존 건강보험으로 시술받은 동종틀니*(임시틀니 포함)
 - * 부분틀니 → 부분틀니, 완전틀니 → 완전틀니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희귀난치성질환자(C) 5%, 만성질환자(E,F) 15%

□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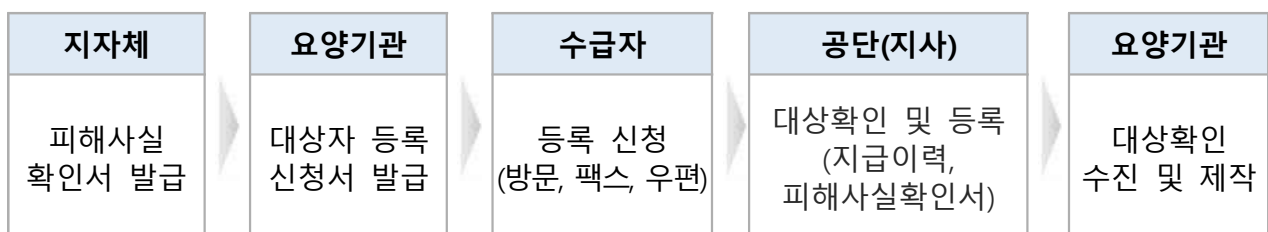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틀니 등록대상자로 교체주기(7년) 전 재난으로 해당틀니(임시틀니 포함)가 파손 또는 분실된 자

□ 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 마감시까지

□ 신청절차

- (제출서류)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신청방법) 공단 지사 팩스, 우편 또는 방문



□ 지원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산불 피해 발생 사업장 중 지원 신청 사업장

□ 지원내용

(납부기한 연장)

- 부과고지사업장: '25.3~5월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자진신고사업장: '25.3~5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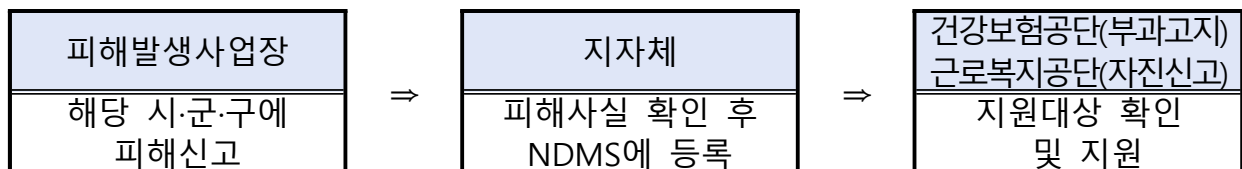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면제)

- 각 납부기한 연장 신청 보험료에 대해 연체금 미부과
- '24년 확정보험료 미신고 자진신고사업장에 대한 가산금 미부과

(체납처분 유예)

- 연체금 징수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 기존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25.9.10.('25.8월분 납기일)까지 유예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기한) 부과고지사업장: 2025. 6. 10. 자진신고사업장: 2025. 5. 15.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해당 사유 발생시 해당기관 문의·신청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6호)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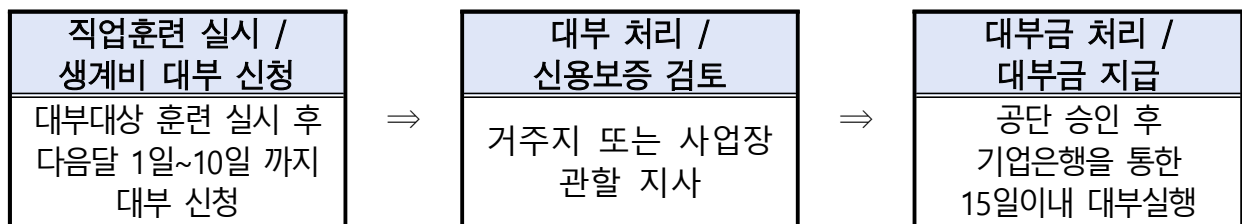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중인 실업자,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 재직(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또는 사업을 영위중인 자(고용보험 자영업자) 중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훈련*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집체 및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 중인자

* 국민내일배움카드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등

□ 지원내용

- '25. 4.1.~'25. 6.10. 에 접수된 '신규'신청서 상 신청개월 수만큼 적용
 - 매달 1일~10일에 직전 달 훈련참여(출석률 80%이상)에 대한 대부 신청
- 소득기준 제한 없으며, 대부액은 1인당 월 200만원 씩 총 2,000만원 한도
- 금리 : 연 1% (공단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지원절차



- 신청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외국인, 재외동포,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채무조정, 특수채권잔액 있는 자

□ 신청방법

- 대부사유 발생시 해당기관 문의·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전자 접수 신청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호)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융자 종목 6종*에 해당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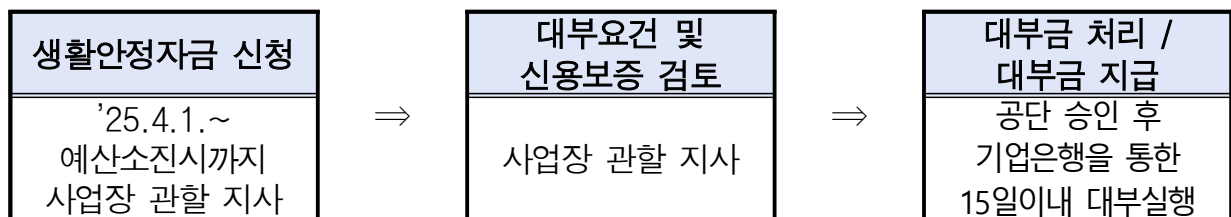
(단위: 만원)

융자종목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융자한도 (만원)	1,000	1,250	1,000	2,000 (1인당 500)	2,000 (1인당 500)	200
융자요건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조)부모 65세 도달부터	자녀 7세 도달이내	휴업, 휴직일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월평균소득 305만원 이하(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없음)
- 1년거치 3년상환, 1년거치 4년상환, 2년거치 4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중 선택
- 금리 연 1.5% (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2종류 이상 신청시 최대 2,000만원

□ 지원절차



- 신청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외국인, 재외동포,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채무조정, 특수채권잔액 있는 자

□ 신청방법

- 대부사유 발생시 해당기관 문의·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전자 접수 신청